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2007. 12

주문배 · 홍현표 · 이언경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주문배 : 제1장, 제4장~제6장

◆ 연구진

- 홍현표 : 제2장
- 이연경 : 제3장, 제5장 제1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송정현 (부경대학교 교수)

◆ 이종성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임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머 리 말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가 채택되어 시장개방화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협상에 들어간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DDA에 의한 수산부문 협상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 그리고 무역왜곡을 야기시키는 수산보조금의 금지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수산보조금 협상의 목표는 수산업에 허용되는 재정·금융적 지원이 무엇인가를 회원국들간에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WTO 보조금협정(SCM)의 기준 및 우리 수산업의 실정에 맞는 보조금의 분류기준을 WTO에 제출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다. WTO 보조금 협정에서 보조금의 개념은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에 지원되는 직·간접적인 재정·금융적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수산조세지원 문제를 포함한 수산보조금의 새로운 분류기준 설정하고, WT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수산보조금 제도의 개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통용되는 수산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 보고서가 현시점에서 출간되는 것은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수산조세지원제도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은 단순히 WTO SCM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산보조금 협상에 조화시키기 위한 수동적인 검토는 아니다. 오히려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가 가진 현 실태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 조화롭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를 대상으로 현황 분석과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WTO 체제하에 있어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다양한 문제점 및 과제를 발굴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정책 입안자 및 어업인들에게도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이 정 환

목 차

Abstract	vii
요 약	ix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제 2 장 수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와 국제규범의 논의 동향	7
1. 수산조세 문제의 인식	7
2. 수산조세의 경제적 효과	8
1) 러너의 대칭이론 / 8	
2) 관세인하 및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9	
3) 이론적 함의 / 11	
3. 수산조세에 관한 국제규범 상의 규제 동향	12
1) WTO 보조금 협상에서 ‘수산보조금’과 ‘조세’ / 12	
2) SCM협정상의 금지대상 조세제도 / 13	
3) 기타 조세제도 / 15	
4. 정책적 시사점	16
제 3 장 수산부문 조세체제와 운영 실태	19
1. 수산업 부문 조세 관련 법체계	19
1) 조세 관련 법체계 / 19	
2) 수산조세의 분류기준별 세목 / 22	

2. 수산조세정책의 변천과 조세지원 현황	23
1) 수산조세정책의 변천 / 23	
2) 수산업 부문 조세지원 현황 / 25	
3. 수산업 부문별 조세감면제도 현황	27
1)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 27	
2)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 43	
3)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조세감면제도 / 63	
4)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감면제도 / 69	
4. 수산부문 조세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72
1) 수산조세 운영실태 조사 / 73	
2) 현행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 78	
제 4 장 수산부문 조세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	91
1.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	91
1) 농업부문 조세지원 / 91	
2) 영농조합법인 등 부문 조세지원 / 96	
2. 일본의 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97
1) 청색신고의 과세특례 조치(소득세·법인세) / 99	
2) 어선의 대체·교환의 경우 특례조치(소득세·법인세) / 99	
3) 어업에 대한 사업세의 비과세(사업세) / 100	
4) 어업용 설비투자와 관련된 특례조치 / 100	
5) 기타 수산관련 세제지원 조치 / 105	
제 5 장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110
1.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	111
1) 수산부문 조세지원의 일반적 쟁점 / 111	
2) 수산조세지원 관련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부조화 문제 / 111	
3) 수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와의 부조화 문제 / 112	
4) 농업 등 타산업 및 수산업내의 타업종과의 불균형 문제 / 113	
5) 현행 세법규정에서의 수산부문 검토과제 / 113	

2. WTO 체제하의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119
1)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120	
2)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121	
3)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127	
4) 수산업내 유사업종과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136	
 제 6 장 결론 - 총괄 및 정책건의	 139
1. 총괄	139
2. 정책건의	140
 참고문헌	 144
 부 록	 145

표 목 차

<표 1-1>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표 2-1> WTO SCM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 조세	17
<표 3-1> 수산조세의 분류기준별 세목	22
<표 3-2> 국세부분 수산조세 감면현황	25
<표 3-3> 지방세부분 수산조세 감면현황	26
<표 3-4>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29
<표 3-5> 중소기업(어업 등)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	31
<표 3-6>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기간별 감면세율	32
<표 3-7>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35
<표 3-8>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36
<표 3-9> 어업용 대표 유종별 세액 및 세율	37
<표 3-10>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시설	38
<표 3-11> 선박등록의 등록세율	41
<표 3-12> 어업권 등록의 등록세율	41
<표 3-13> 중소기업의 기준	45
<표 3-14>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46
<표 3-15> 첨단기술설비	46
<표 3-16> 유통산업합리화시설	48
<표 3-17>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	49
<표 3-18>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9
<표 3-19> 중소기업(어업 등)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	51
<표 3-2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52
<표 3-2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57
<표 3-22> 이전대상 공장범위	61
<표 3-23> 납부하는 수산 조세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목	74
<표 3-24> 납부하는 수산 조세 중 개선이 필요한 세목 및 개선 희망 세목	75

<표 3-25> 지원세제 혜택 여부	76
<표 3-26> 주요 혜택 세목	77
<표 3-27> 일몰기간 연장 요구세제	78
<표 3-28> 부가가치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 대한 의견	79
<표 3-29> 면세유 공급대상에 대한 의견	80
<표 3-30> 자영업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의견	81
<표 3-31>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에 해당하는 수산조세 추가 여부에 대한 의견	84
<표 3-32> 동식물 번식/양식 등을 위한 수산물 비관세 여부에 대한 의견	87
<표 3-33>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수산유통 및 가공업자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	89
<표 3-34>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대상에 어선수리용역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89
<표 4-1> 일본의 어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98
<표 4-2> 청색신고자의 특례 내용	100
<표 4-3> 소액 감가상각자산 취득원가의 손금산입 특례내용	102
<표 4-4> 어선의 고정자산세에 대한 특례조치	102
<표 4-5> 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식	104
<표 4-6>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108
<표 4-7> 특정지역 어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109
<표 5-1> 중도매인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	119
<표 5-2> 수산업 공통으로 개선이 필요한 세제	122
<표 5-3> 생산자 단체에 적용되는 세제	126
<표 5-4>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수산업 공통 적용 대상	128
<표 5-5>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어선어업 적용 대상	132
<표 5-6>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양식업 적용 대상	134
<표 5-7>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생산자 단체 적용 대상	135
<표 5-8> 수산업내 유사업종간 불균형 시정 대상 세제	137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6
<그림 2-1> 관세인하(혹은 수출보조금지원)의 효과	10
<그림 3-1> 수산관련 세법의 법률체계	20
<그림 3-2> 수산관련 지방세법	21
<그림 3-3> 업종별 조세지원 현황(2006년 기준)	27
<그림 3-4>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28
<그림 3-5> 수산유통·가공 관련 조세감면제도	44
<그림 3-6>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조세감면제도	64
<그림 3-7>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감면제도	70
<그림 3-8> 설문조사 분석 틀	73
<그림 3-9> 비관세 대상 선용품 범위에 어선관련 장비의 추가에 대한 의견	81
<그림 3-10> 해외임가공 수산물에 대한 비관세 필요성에 대한 의견	82
<그림 3-11> 수산가공원료의 적정 의제매입세 공제비율에 대한 의견	83
<그림 3-1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는 수산조세 추가 여부의 의견	84
<그림 3-1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응 수산조세 추가 여부	85
<그림 3-14> 영농조합법인의 영농목적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의 조화	86
<그림 3-15>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 50% 감면제도 부활여부에 대한 의견	89
<그림 3-16> 연장·갱신 면허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의견	90
<그림 3-17> 지방의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90

ABSTRACT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Tax-aid System for Fisheries Under the WTO Regime

In this paper, we focus on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as a policy method for the conversion of harmonious and competitive fisheri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 the light of circumstances affecting fishing industries. For the achievement of this purpose, we investigate the following aspects: First, we research the economic impact of tax-aid for the fisheries and fishing industries and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we explore the fisheries tax system and its operation status. In addition, we survey fishermen's awareness of the burden of taxation and a reduction of taxation in the fisheries and the fishing industry. Third, we analyze the cases regarding the fisheries' tax-aid system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country. Fourth, we deduce the points at issue regarding the fisheries' tax-aid system 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ions mentioned above and we propose remedies for the fisheries and the fishing industries' tax-aid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re are points at issue regarding what we deduced about the fisheries' tax-aid system.

First, we suggest the general issues involved to ascertain the logicity of the fisheries' tax support. Second, we indicate the problem of discordance in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s affecting the fisheries' taxation. Third, we bring up the problem of disharmony in the current change of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isheries and fishing industry. Fourth, we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disproportion between the fisheries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Fifth, we carry out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existing regulations of the tax law.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investigated, we propose the most important steps needed for improving the tax-aid system of the fisheries industry that they require to be resolved immediately, to boost the fisheries' competition and to sustain public interest.

First, we present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government's abandonment of tax revenue related to export results and import substitution which is regulated in the WTO SCM and the tax exempt fuel which is continuously filed as a prohibitive subsidy category in the process of fisheries subsidy negotiations.

Second, we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post restoration items for the intensification of fisheries' self-viability and sound management. This is surtax on the use of materials in the fisheries and fishing industry.

Third, we outline an extensive plan to enlarge supply objects of tax exemption oil used for producing marine products. It focuses on carrying out public functions continuously to stabilize fisheries' management in the era of high oil prices.

Fourth, it indicates that the tax reduction system is a solution to cope actively with the new circumstances affecting the fisheries industry, which is about the costs involved in converting gradually into an ecosystem preserving the fisheries.

Fifth, we present the introduction of a taxation exemption law of voluntary reporting tax, similar to the Japanese voluntary reporting system.

Sixth, we suggest the total tax exemption of income from fishermen's side jobs, excluding fishermen who declare their main occupation as fishing, and its size and income level. It is possible to make new clauses, as it is referred to as "fishermen's additional earnings from side jobs" in the tax exemption law.

In addition, we suggest alternatives like the tax exemption on premises housing the fisheries' management, tax cuts on the transfer income tax generated from fishermen selling the land used for farming to cultivate aquatic products, the tax exemption of an income tax generated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reasury stock dividend, and an income tax reduction about income protection subsidy from contracting FTA.

제1장 서론

- 수산업에 있어서 조세지원제도는 정부보조금과 함께 수산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WTO 체제의 확대·강화 및 FTA 체결 확산을 바탕으로 한 시장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수산업 경영에 대한 동기유발 등 경영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 WTO/DDA 협상에서 면세유 등과 같이 조세지원을 통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도 보조금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함
 - 농업 및 수산업 등의 취약한 산업에서는 감세 등 조세지원정책이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세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산부문의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제2장 수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와 국제규범의 논의 동향

- WTO SCM(보조금 협정)에 의하면, 상품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원제도는 금지보조금이며, 또 한 수출입 관계에 있는 WTO 회원국간 일국의 조세지원이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조세지원제도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통상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그런데, 현재 협상과정에 있는 WTO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에서 최우선 과제는 수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정의 또는 분류하느냐는 것임. WTO SCM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이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뉴질랜드 등의 FFG 국가들은 면세유 등 조세지원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보조금 협정과 이행을 위한 논의동향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대책이 필요함

제3장 수산부문 조세체계와 운영 실태

1. 수산업 부문 조세 관련 법체계

-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조세지원과 관련된 국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이 있으며
 - 지방세법 상 수산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세제 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주행세, 면허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이 있음
- 수산조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부문별 조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어선어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조세는 소득세·법인세·인지세·관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 지방세
 -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는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 수협 관련 조세는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등록세·사업소세 등 지방세
 - 영어조합법 관련 조세는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부문과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관련됨

2. 수산조세정책의 변천과 조세지원 현황

- 2000년대 우리나라 세제지원 방향은 연구개발·중소벤처기업 지원·외국인 투자 촉진 등 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전반적으로 조세감면축소를 위하여 적용내용·대상을 명확화하고 적용비율 등이 축소되고 있음
- 2006년 말 기준으로 수산부문 조세감면 혜택은 총 8,342억원이며, 이중 국세는 8,282억원(99.3%), 지방세는 60억원(0.7%)임
 - 국세 중 수산조세감면 혜택이 가장 큰 부문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감면’으로 2006년 기준 수산조세 국세부문 총 감면혜택의 85.6%(7,092억원)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5.2%(433억원)인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 적용’임
 - 또한 수산조세의 국세부문은 95.2%(7,883억원)가 어선어업 및 양식업에 지원되고 있음

3. 수산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현황

-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493호)을 비롯하여 소득세법(법률 제8435호), 법인세법(법률 제8141호), 상속세·증여세법(법률 제8435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8142호), 특별소비세법(법률 제8139호), 인지세법(법률 제8343호), 증권거래세법(법률 제8139호), 교육세법(법률 제813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8138호),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8139호),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8435호), 관세법(법률 제8367호), 지방세법(법률 제8491호),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8360호),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8466호)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정됨

4. 수산부문 조세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 납부하고 있는 수산 조세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목을 묻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어선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수협, 영어조합법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인 것으로 나타남

- 납부하고 있는 수산 조세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세목을 고르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산부문(어선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수협, 영어조합법인) 종사자들 모두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세목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 수산부문 종사자들 대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선택함
- 지원방법을 개선해주기를 희망하는 세제는 어선어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양식업자들은 상속·증여세, 유통가공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협은 법인세 등임
 - 이는 우리나라도 수산업에 있어서 경쟁체제가 서서히 구축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의한 법 적용보다는 성과에 따른 혹은 기준 세분화에 의한 적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어선어업자들과 양식업자들은 현재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 세제에 대한 2012년말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해주기를 희망함
 - 유통가공업은 가공 및 생산자동화를 위한 설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부분의 2009년말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해주기를 희망함
 - 수협의 일몰기간 연장 희망 세제는 현재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된 ‘수협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저율과세)’로서 응답자들은 2009년말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하기를 요청함

제4장 수산조세 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

-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되는 조세지원제도는 농지 등의 취득, 보유, 경작 및 이전과 관련되는 조세,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관련되는 조세, 농업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조세 등 매우 다양함. 이러한 농업 부문 조

세지원제도(감면제도)는 농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농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영농을 위한 농가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농협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임

2. 일본의 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 일본의 농림수산부문 조세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농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정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임업 및 목재가공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음
- 2007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관계 세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업협동조합등의 유보소득의 특별공제제도 연장, 어업협동조합등의 대출담보금 특례조치 연장, 농업경영소득안정대책등(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미정책개혁추진대책, 농지·수·환경보전향상대책)의 교부금에 대한 특례조치의 설치, 식품리사이클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생상품화 설비등(식품순환자원재생리용설비)의 특별상각제도 확충(소득세·법인세), 식품기업, 농림어업자 등의 감가상각제도에 대한 상각가능한도액을 폐지하는 등 필요조치 등임

제5장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1.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

-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수산부문 조세지원에 대한 일반적 쟁점으로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수산조세 관련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부조화 문제, 즉,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설정된 보조금 협정(SCM)과 이행을 위한 논의동향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한 수산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수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와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최근, 수산업은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기능적 측면에서 개선이 절실함
 - 농업 등 타산업 및 수산업내의 타업종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조세부과 또는 감면의 제1의 원칙은 형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장 및 제4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업 등 타산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뿐만 아니라, 같은 수산업 내에서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농업부문 등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및 수산업내 타업종간의 불균형 시정문제가 개선과제로 정리될 수 있음
- 현행 세법규정에서 수산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업 등 타 산업부문 세제와의 불균형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 범위의 차별성(조특법§105), ② 면세유 공급대상 범위의 불균형(조특법§106의2), ③ 지방세 감면 대상의 차별성(지방세법§267), ④ 비관세 대상 선용품 범위의 차별성(관세법§2), ⑤ 관세감면 해외임가공 품목범위에 수산물 불포함(관세법§101), ⑥ 수산가공원료의 의제매입세 공제율 불균형(부가가치세법§17)
 - 농업에만 지원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69), ②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의 면제(조특

법§71), ③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70), ④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법 §266), ⑤ 영농용 취득한 농가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농어촌특별세법§4)

- 과거에 비해 축소된 사례는 원양어선원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 50% 감면 제도(소득세법 법률 제3472~4744호§72)임
- 수산업내에서의 형평성 및 적용 적정성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수산가공업자의 면세유 공급문제(조특법§106의2), ②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대상(조특법§105)에 어선수리용역 포함여부, ③ 연근해어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범위(소득세법§12), ④ 중도매인의 면허세 이중과세 문제(지방세법§161), ⑤ 지방의 매출계산서 의 무발행비율 문제(소득세법시행령§147) 등임

2. WTO 체제하의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수산부문 조세지원의 일반적 쟁점인 수산부문 조세지원의 논리적 타당성 확보 문제는 해양환경보전, 어촌문화 계승, 연안환경 개선, 어촌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산업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의 본질적 기능과 조세의 기능과의 조화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조세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획득, 부의 재분배, 경제정책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가 자원배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의 조세지원제도는 수산업과 농축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보호 및 육성 등 정부의 경제정책적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1)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면세유 공급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면세유 제도를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방안으로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일명, 조특법)상의 면세규정을

부가세법, 교통세법 등 개별세법으로 이관하여 외국의 감시대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울러 조특법상 일몰규정에 따른 개정 반복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함

2)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1) 수산업 부문 공통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수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이 요구되는 주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요약 표 1>과 같음

<요약 표 1>

수산업 공통으로 개선이 필요한 세제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①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품목	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품목 대상 - 양어장용 필름 등 14개 품목	사후환급품목 대상 추가 - 어업용 얼음, 어선·어망용 방오도료, 양식장용 사료 살포기, 건멸치(건새우) 선별기, 오징어 어획용 추, 양식장용 액화산소 발생기 등
② 면세유 공급대상	면세유류 공급대상 - 연근해·연안·내수면어선 - 나잡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 시설 - 어민직영 수산물생산기초시설 - 육상양식어업용·육상종묘생산시설 - 어획물운반선 - 낚시어선업용 선박	면세유류 공급 대상 추가 - 수협직영 어업지도선 및 나잡어업종사자 수송용 선박 - 수협직영 유류운반선 - 해양폐기물 및 어장정화용 선박 - 수산물생산기초시설(07.10 어민직영삭제)의 대상 확대 - 해상양식어업용·해상종묘생산시설
③ 안전안심수산물 공급시설투자	수산물 공급시설 투자 과세특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지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과세특례의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조항을 명시 일몰기간 재설정 -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 설정을 재검토 ※ 세제지원제도 홍보 및 지도 강화

<요약 표 1>

수산업 공통으로 개선이 필요한 세제 - 계속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④ 친환경 수산용 시설투자	<p>친환경수신용시설투자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방지시설,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청정생산시설 <p>※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제1항 :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실시</p>	<p>과세특례의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환경보전시설 범위 및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청정생산시설 범위에 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명시, 예코라벨링제도 도입 투자 과세 특례 산업별 일몰기간 재설정 -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 설정을 재검토 <p>※ 세제지원제도 홍보 및 지도 강화</p>
⑤ 신고납세자 특례 (청색신고자특례)	<p>일본의 청색신고 제도</p>	<p>신고납세자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법인 어업자의 신고납세자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 <p>※ <표 4-2> 일본 사례 참조</p>

(2) 어선어업 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어선어업 부문에 적용이 요구되는 주요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어선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신설 : 고유가 및 임금상승 등 어선어업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어선어업의 경영을 건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원양어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소득세 특례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참치선망선의 경우 선장 및 기관장들이 임금이 높은 대만 등으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선장 및 기관장들의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의 일정비율 감면제도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수협 등 생산자 단체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협동조합으로서 수산자원의 관리 및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어업지도,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어촌계 등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세제지원 방안을 요약하면 <요약 표 2>와 같음

<요약 표 2> **생산자 단체에 적용되는 세제**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수산회사법인제도 과세 특례	<p><신설></p> <p>※ 「수산업법」상 수산회사법인제도 도입 필요</p>	<p>수산회사법인의 과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를 감면 - 부대사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치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동 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 어업인이 동 회사법인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② 조합 공동사업법인제 과세 특례	<p><신설></p> <p>※ 「수협법」상 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필요</p>	<p>조합공동사업법인 과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과세 특례 - 고유목적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3)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조세제도의 제1의 원칙인 과세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농업 등 타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부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것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수산업 부문 공통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타산업과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수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이 요구되는 주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요약 표 3>과 같음

<요약 표 3>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수산업 공통 적용 대상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어가부업소득 비과세	<p>농가부업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양어·가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p>어가부업소득 비과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부업소득과 별도 규정으로 「어가부업소득 비과세」조항 신설 ※ 어업인이 주업(주업으로 신고한 수산업)으로 영위하는 수산업 이외의 부업(축산·가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어가주택 취득세 과세 특례	<p>농가주택 취득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종사자가 영농을 위해 농가주택(부속토지포함) 취득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결 시군구 소재 한정 	<p>어가주택 취득세 비과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업 또는 양식업 종사자가 어선선적지나 양식장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결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구입시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③ 창업 중소기업 과세 특례	<p>창업 중소기업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과세 특례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연구 및 개발업, 물류산업 등 - 소득세·법인세 3년간 50% 감면 - 창업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농특세 비과세 	<p>창업 중소 수산기업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종에 어업, 양식업 및 관련 수산가공업을 포함
④ 사업용 자산취득 세액공제	<p>사업용 자산 신규취득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신규 취득시,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대상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광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p>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종의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을 삭제하고, 수산업으로 개선하여, 지원의 대상을 확대
⑤ 어업시설물 취득시 과세 특례	<p>자경농업시설물 과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대상시설 : 양잠·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사폐수및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 상온, 농기계보관용에 한함), 농산물선별처리시설 	<p>자영어업시설물 과세 특례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업시설물에 조화되게 자영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대상시설 : 수산물 자숙·건조·처리시설, 보관창고(저온, 상온, 어구보관용에 한함),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부속시설 등

<요약 표 3>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수산업 공통 적용 대상-계속**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⑥ 어업용 대토시 과세특례	<p>육상농업용토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p> <p>-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및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하거나,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하는 경우, 동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p>	<p>육상어업용토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신설</p> <p>- 3년 이상 종전 육상양식 및 어업용(양식 및 종묘생산업등) 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신설</p>

(2) 어선어업 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타산업과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적용이 요구되는 주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요약 표 4>와 같음

<요약 표 4>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어선어업 적용 대상**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어선어업권에 대한 영여자녀의 증여세 면제	<p>자경농민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p> <p>-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일정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재존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p>	<p>영여자녀에게 증여하는 어선·어업권 과세 특례 신설</p> <p>- 자영어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일정한 규모의 어선·어업권을 영여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p>
② 자영어업인의 어선·어업권 상속 과세 특례	<p>자경농민 농지 상속시 취득세 비과세</p> <p>- 자경농민 및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를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p>	<p>어선·어업권 상속시 취득세 비과세 특례 신설</p> <p>- 자영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수산업계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이 직접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한 규모의 어선·어업권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p>

<요약 표 4>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어선어업 적용 대상**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③ 선용품 및 어선수리용 관세 비과세	상선 선용품 및 수리용 부품 수입관세 면제 - 상선에 필요한 수입 선용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 면제	어선 선용품 및 수리용 부품 수입관세 면제 추가 - 어선의 어획도구 및 장비류, 어선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선용품의 범위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당해 선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상선 위주로 규정되어, 어선용의 경우 과세됨	

(3) 양식업 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타산업과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적용이 요구되는 주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요약 표 5>와 같음

<요약 표 5>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양식업 적용 대상**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육상양식용 토지 양도소득세 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경영이양직접지부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1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농지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 자영어업인이 직접 경영하는 육상양식장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
② 재산세 저율분리 과세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토지 - 고율의 종합합산과세 : 2/1000~5/1000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대상 및 세율 - 저율 분리과세 대상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등 - 적용세율 : 0.7/1000	육상양식어업용 재산세 저율분리 과세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토지 :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

(4) 수협 등 생산자 단체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타산업과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요약 표 6>과 같음

<요약 표 6>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생산자 단체 적용 대상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자사지분 배당 소득 소득세 비과세	<p>농협자사지분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요건은 근로자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자사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별 자사지분의 액면가액 1,800만원(2008년말까지 3,000만원) 이하일 것 	<p>수협자사지분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법에 자격요건 규정 필요 - 비과세 요건은 근로자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자사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별 자사지분의 액면가액 1,800만원(2008년말까지 3,000만원) 이하일 것
② 어선어업권 취득시 지방세 과세특례	<p>농업법인 영농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50% 경감 	<p>영어조합법인의 부동산·어선·어업권 취득시 지방세 감면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어선·어업권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4) 수산업내 유사업종과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수산업내 유사업종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요약 표 7>과 같음

<요약 표 7>

수산업내 유사업종간 불균형 시정 대상 세제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FTA 체결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p>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p>	<p>어업협정 지원금의 소득세 면제 및 어선·어구 개선 비용에 대한 과세 특례와 차별성 시정</p>

<요약 표 7>

수산업내 유사업종간 불균형 시정 대상 세제 - 계속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② 영어상속공제	<p>영농, 영어 상속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요건하에 영농(양축·영립 포함)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농지·초지·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됨으로써 원활한 영농승계 및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p>영어상속공제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상속재산의 범위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를 상속공제대상에 추가
③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p>원양어선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부문 영세율 적용 : 사료 및 어업용 기자재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p>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선 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④ 어업종사자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p>원양어선원 소득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원양어업선박 및 국외 등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p>연근해어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추가

제6장 결론 - 총괄 및 정책건의

- 이장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의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물론, 조세지원은 흑자의 지적처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점도 있으나, 여기서는 조세지원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한계도 있음을 밝힘
-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주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수산업용 유류사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② 수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품목 확대
 - ③ 수산물 생산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 확대
 - ④ 친환경 수산용 시설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 개선
 - ⑤ 자진신고납세자 과세특례제도 도입
 - ⑥ 어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액 비과세
 - ⑦ 영어를 위한 어가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어업, 양식
 - ⑧ 육상양식 및 어업용 토지의 대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⑨ 수협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 소득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간적 한계 및 관련자료 입수의 곤란 등으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결론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며, 향후에 이러한 한계를 넘어 대안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민경제의 흐름에서 조세는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재산에 대해 부과됨으로써 세수의 확보,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조세제도 중에서 조세지원제도(일명 세제지원제도)는 조세징수의 포기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와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특히, 수산업에 있어서 조세지원제도는 정부보조금과 함께 수산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WTO 체제의 확대·강화 및 FTA 체결 확산을 바탕으로 한 시장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수산업 경영에 대한 동기유발 등 경영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수산부문이 지금까지와 같은 구조개편 정책 등을 수반하는 대대적인 변화의 시대를 지나고, 향후 미세한 요인이 시장에 미치는 장기균형 상태에 돌입하면, 어업인의 경영동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최근 DDA 협상이 결렬되고 있으나 추후 재론될 경우 보조금 및 세제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편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DDA 협상에서 면세유 등과 같이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도 보조금이며, 이러한 보조금은 자원고갈을 조장하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 감축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¹⁾

농업 및 수산업 등의 취약한 산업에서는 감세 등 조세지원정책이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세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

1) WTO/SCM 협정상 보조금의 정의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민간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전적 형태의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의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첫째, WTO 보조금 협정 및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을 검토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어업인을 비롯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셋째, 수산조세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넷째,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과제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조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는 다수 있지만, 수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수산조세를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 년전인 1995년 농촌경제연구원 김기성 씨의 「수산조세 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와 최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이종성씨의 「농·어업부문 조세지원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전자는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수산관련 세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수산업 관련 조세체계와 주요 감면 세목을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이들 감면세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당시의 시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후자는 농·어업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어업부문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농·어업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법률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그 차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부문 세제감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 외에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최근의 농수축산업 관련 조세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농업조세정책의 과제와 논리 - 연구자(년도) : 최광(1991) - 연구목적 : 농업부문과 관련된 세제의 주요 정책과제를 개괄적으로 정리 및 검토하여 추후 세부적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연구 자료 검토 및 주요 조세통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개입과 농민의 세부담 - 농업관련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유통과세 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 세제의 평가기준과 농업세제 정책 방향 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수산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 연구자(년도) : 김기성(1995) - 연구목적 :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세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 관련 조세체계와 주요 세목 - 수산 관련 감면조세제도의 현황 - 수산감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세제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연구자(년도) : 임주영(1996) - 연구목적 :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제규범에 조세제도를 조화시키고, 또한 시장개방화와 선진화를 위한 조세제도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제도적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제도의 운용 현황 - UR보조금협정에 따른 세제지원제도의 분류 -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세제지원제도 개편방향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 방향 - 연구자(년도) : 김기성(1997) - 연구목적 : 농림수산인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정책세제로서 조세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 -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현황 -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발전방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신어업어촌 발전연구」 - 연구자(년도) : 신영태(2003.2) - 연구목적 : 수산부문의 면세유 및 어업용기자재부가세 정책 등의 문제점과 대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연구 서베이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 이론적 배경과 외국사례 - 면세유의 세부 정책 방향 - 어업용기자재 부가세환급 대상 품목 - 소득세 비과세 범위 등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 - 계속

<표 1-1>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6 - 과제명 : “농·어업부문 조세 감면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 - 연구자(년도) : 이종성(2006.6) - 연구목적 : 농·어업부문 조세 감면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어업부문 세제개선방안 제시	- 법제도적 분석 - 비교분석법	- 농·어업부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분석 - 어업부문 세제개선방안
본 연구 (차별성)	-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산관련 부문별, 즉 어선어업, 양식업, 유통가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세지원제도 및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국제규범(WTO 보조금 협정)과 조화되는 새로운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법제분석 - 실태조사 - 수산인 의견조사 - 농축산업 및 일본 농수축산업 조세지원 사례 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 WTO 보조금 협정과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 수산조세제도의 이론적 검토 - 수산조세 관련 법제상 실태 분석(어선, 양식, 유통가공부문별) 조세지원 실태 분석 -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도출 -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WTO 체제하의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부문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어업인을 비롯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 그리고 수산조세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개선방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추진전략은 현행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운영 실태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1차적으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또는 수요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조세부문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관련서적 및 연구논문, 관련법령집, 통계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한 제도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 제도적 연구는 WTO 체제하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수산부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조세

항목과의 괴리 또는 가능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같은 1차 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유사한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일본의 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사례 분석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법으로서는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어업인 및 관계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선행연구나 실태에 대한 자료 축적이 미흡한 분야이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업생산자는 물론 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및 생산자단체의 조세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의 직·간접적인 조사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전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 선행연구 검토 및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산조세 지원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WTO 보조금 협정 및 수산보조금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수산조세지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업 부문별 조세지원제도의 실태, 그리고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산조세지원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사례로서 농·축산업부문 조세지원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유사한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일본의 농수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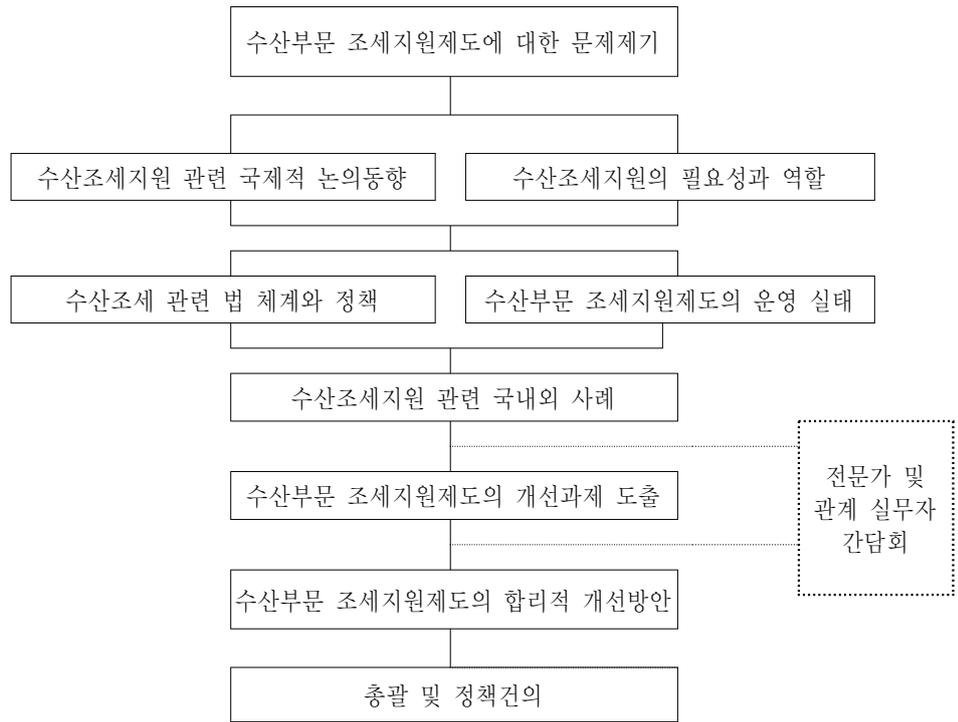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제6장 결론에서 전체를 요약, 정리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으며,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는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연구추진체계와 흐름을 요약하면 <그림 1-1>과 같다.

연구추진체계

<그림 1-1>



제 2 장 수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와 국제규범의 논의 동향

1. 수산조세 문제의 인식

조세정책은 한 나라의 재정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재정정책적인 고유 목적 이외에도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조세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분석 논리도 다양할 뿐더러, 특히 수산조세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조세의 개념과 형태도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부(負)의 과세(보조금) 등 여러가지 형태로 시행될 수 있으므로 그 형태별로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수산분야의 특성상 어업인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와 동 재원을 이용한 재투자 정책 등과는 상호 연계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으므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되는 거래세(혹은 負의 거래세)를 중심으로 조세 정책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통상적으로 수산조세 문제는 주로 폐쇄경제(closed economy) 하에서의 조세 문제와 개방경제(open economy) 하에서의 조세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전자는 한 국가내의 산업 혹은 부문간의 자원배분 효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소득분배 효과 등이 주요 논점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특정 산업 내에서도 국내 생산물과 해외 수입품 간의 비교우위 확보 전략이 주요 논점이 되어 왔다. 이에 본 절에서는 상기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수산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되, 이와 같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의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조세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수산조세의 경제적 효과

1) 러너의 대칭이론

개방경제 하에서 거래세는 크게 수출상품의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부과되는 수출세(혹은 수출보조금)와 국제교역시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세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와 같이 국내 해당상품의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이것을 소위 러너의 대칭이론(Lerner's symmetry theorem)²⁾이라 한다.

특정 산업 내에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P_M^D , 수출품의 국내가격을 P_X^D 라 하자. 그리고 동 제품의 해외 수입가격은 P_M , 수출가격은 P_X 라 하자. 이제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국내 상대가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먼저 수입품에 t 의 관세율(증가세)을 부과하여 국내에 들어오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나 수출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때는 수출품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은 동일($P_X^D = P_X$)하지만,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해외 수입가격에 관세율만큼 가산되어 형성될 것이다. 즉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P_M^D = P_M (1 + t)$$

가 된다. 따라서 이때의 상대가격은

$$p_1 = \frac{P_M^D}{P_X^D} = \frac{P_M(1+t)}{P_X} = p_w \times (1+t)$$

가 된다. 즉 수입품과 수출품의 국내가격기준 상대가격은 세계가격 기준 상대가격에서 관세율 만큼 수입품의 상대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에는 수입품은 무관세로 자유롭게 수입되지만, 수출품에 대해서는 생산 혹은 유통단계에서 수출세(혹은 수출보조금)가 부과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해외가격과 같지만($P_M^D = P_M$), 수출품의 해외가격은 국내가격에 수출세율 t (증가세 가정)만큼 증가하여 수출될 것이다. 즉

2) Lerner, A.P., "The Symmetry between Import and Export and Taxes", *Economica*, Aug. 1936.

$$P_X = P_X^D \times (1+t) \text{ 혹은 } P_X^D = P_X / (1+t)$$

따라서 이때의 상대가격은

$$p_2 = \frac{P_M^D}{P_X^D} = \frac{P_M}{P_X / (1+t)} = p_w \times (1+t)$$

이다. 역시 수출세율만 부과되는 상황에서 국내 상대가격은 세계시장 상대가격보다 수입품가격이 t 만큼 증가하는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가격 $p_1 = p_2$ 으로서, 러너의 대칭이론을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과세도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일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나라간의 비교우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러너의 대칭이론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정한 관세가 모든 수출에 대한 일정한 과세와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개별 수출입 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수출품의 지수적 가격과 모든 수입품의 지수적 가격 간의 상대가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2) 관세인하 및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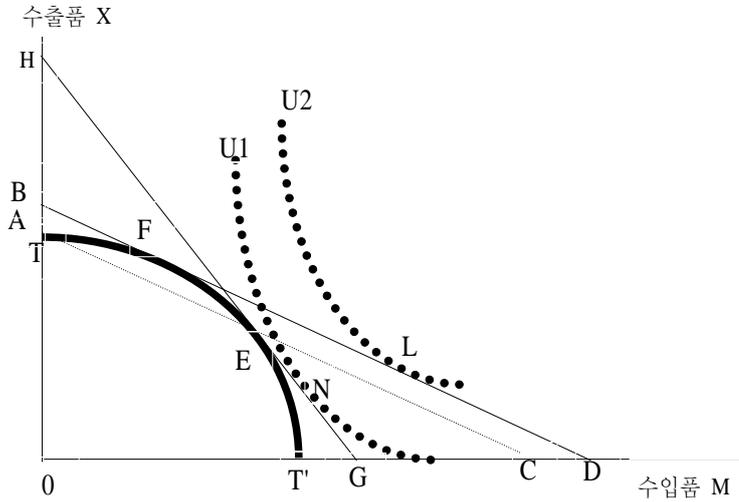
앞의 러너의 대칭이론에 따르면, 관세부과와 수출조세 부과가 국내 상대가격 변화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와 동일함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수출품과 모든 수입품으로 집계된 상태에서 평균적인 효과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제 양국간의 교역이 비교우위론에 따라 발생하고, 한 나라의 상품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수출품(X)과 비교열위에 있는 수입품(M)의 2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이 나라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두 재화간의 상대가격은 선분 HG이다. 두 재화에 대한 이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이 TT'일때, 두 재화간의 상대가격이 HG이면 E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즉 두 재화의 생산은 E점의 X축 및 Y축과의 교점 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대가격 하에서 이 나라 국민들의 효용함수를 U1이라 하자. 이때 이 나라 국민들은 N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M 재화를 N과 E점의 X축 상의 거리만큼 수입해야 하고, X재화를 E와 N점의 Y축 상의 거리만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현행 관세율 구조에서는 생산점과 소비점이 각각 E와 N이므로 이로 인한 비교우위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발생한다.

<그림 2-1> 관세인하(혹은 수출보조금지원)의 효과



그런데 관세를 t 만큼 인하했을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수입품 M의 가격은 해당 관세 인하율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두 재화간의 상대가격은 HG의 기울기에서 BD의 기울기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와같이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최적생산 및 소비점은 각각 F와 L점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세인하로 인한 교역조건 변화에 따라 다음 두 가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관세인하 등의 무역자유화로 인한 생산 및 소비상의 이득이 발생한다. 즉 관세 인하 전의 생산 및 소비점은 각각 E점과 N점이었으나, 관세 인하 이후에는 F점과 M점으로 이동한다. 우선 생산점이 E에서 F로 이동하면, F점에서의 총생산물 가치는 OB(수출품 X로 환산) 혹은 OD(수입품 M로 환산)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전의 E점의 총생산물가치는 현재의 세계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OA 혹은 OC 수준에 불과하다. 즉 관세인하로 인해 생산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인하시 소비점이 N에서 L로 이동하므로 사회적 효용수준도 U1에서 U2수준으로 증가한다.

둘째, 관세인하 등의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일국의 두 재화 간에도 수출 및 수입 특화가 훨씬 더 활발히 진행된다. 즉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품 M 은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생산감소를 통해 더욱 수입에 특화되는 한편, 수출품 X 는 상대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증가를 통해 더욱 수출에 특화된다. 이와 같은 관계는 수입품 M 의 관세가 그대로이고, 수출품 X 에 대한 수출과세 t 가 부과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X 재화에 수출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X 재의 세계가격은 국내가격보다 저렴해지므로 수출이 증가하므로 국내생산은 증가할 것이다.

3) 이론적 함의

이와 같은 이론적 검토 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우선 수산조세란 부(負)의 보조금을 의미하고 이 중에서 세액감면 혹은 면제 등의 정책은 사실상 수산보조금과 같은 정책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산조세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산보조금 규율의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전환되며, 실제 DDA 보조금 협상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수산조세의 개념으로부터 살펴보면 러너지효과를 근거로 수출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산조세의 감면 혹은 면제정책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정책과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³⁾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철폐 및 보조금 논의 등은 상기와 같은 러너지 효과를 근거로 동일선상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제 5장에서 제시될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이란 기본적으로 보조금 및 관세 협정 시 해결방향과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수산조세 중에서 소득세 및 소비세 등은 국민경제의 일부로서 어가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대한 재투자 활동 및 수산물 소비함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거의 무시할 만하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조세들은 수산업의 생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에 부과되는 수산조세들(유류세, 부가세, 법인세 등)은 어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3) 실제로는 수입품목의 구성과 수출품목의 구성이 차이가 나는 만큼 경제적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3. 수산조세에 관한 국제규범 상의 규제 동향

1) WTO 보조금 협상에서 ‘수산보조금’과 ‘조세’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에서 최우선 선결과제는 수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통상법에서 유의할 정의는 WTO SCM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다.⁴⁾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보조금’ 정의에 따라 1997년부터 CTE(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DDA 출범 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DDA가 출범한 제4차 WTO 각료회의(2001년 11월 14일)부터는 규범협상 그룹 회의에서 최근까지 수산보조금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DDA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문제는 SCM 협정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해소하고 적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WTO 규범의 개념과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규범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최근까지 각국의 보조금 등에 관한 제안이 첨예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⁵⁾ ① 정부 자금의 직접이전(무상지원, 지분참여 등), 채무부담의 직접이전(대출보증)의 지급형태와 함께, 세입을 포기(세입 공제 포함)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사회간접자본 제외)하는 경우 등의 정부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거나, 혹은 소득 또는 가격의 지지(income or price support)가 존재하는 경우 및 ② 이로 인한 수혜(benefit)가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산보조금’ 개념 중에 ‘세입의 포기(세입공제 포함)’라는 조세지원 개념이 보조금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 협정에서는 상기와 같은 개념의 보조금 중에 1) 법률적 특정성(de jure specificity) 및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은 당초부터 규제대상 보조금이 아니다⁶⁾. 따라서 ‘세액의 공제’로 구분되는 조세 문제에 대해서도 특정성이 있을 경우 논의 대상이 된다.

4) 농업보조금은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SCM 협정은 농업을 제외한 공산품과 수산물에 적용된다.

5) SCM 제1조 1항

6) SCM 제2조 1항

2) SCM협정상의 금지대상 조세제도

비농산물 분야의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조금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SCM협정에 따르면,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으로서, 이를 사용할 경우 다른 회원국은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WTO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CM 부속서 1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금지보조금 형태로서,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제시하고 있다.⁷⁾

(1)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부과금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

SCM협정 부속서 1.5(Annex 1(e))에 따르면,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부과금을 명시적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할 경우 이를 금지대상 수출보조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접세’란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사용료 혹은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동산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수산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

(2) 직접세의 특별공제

또한 SCM협정 부속서 1.6(Annex 1(f))에 따르면, 직접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세액공제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 또는 수출실적과 직접 관련되는 특별공제를 허용할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규정된다. 예컨대 내수용 물품 생산자에 대한 직접세 세액공제보다 수출용 물품 생산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 크면 이는 금지대상 수출보조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3) 간접세 할인제도

SCM협정문 상의 간접세 정의에 따르면, 판매, 소비, 매출, 부가가치, 면허, 인지, 이전, 재고 및 설비 등에 대한 조세, 국경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접세와 수입과징금을 제외한 모든 조세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용 생산물에 대한 이와 같은 간접세를 특혜성으로 할인하는 경우도

7) 농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지급은 농업협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금지보조금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됨(SCM 제3조).

금지대상의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우선 SCM협정 부속서 1.7(Annex 1(g))에서는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해서 수출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경우 이를 특혜성 간접세 할인제도로 간주하여 금지대상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SCM협정 부속서 1.7(Annex 1(g))의 규정은 수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 과다 환급은 국제규범에 따라 금지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부과되는 동종의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혹은 유예를 초과해서 수출품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혹은 유예를 실시하는 등의 특별 할인제도가 존재할 경우에도 금지대상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SCM협정 부속서 1.8(Annex 1(h))).

이때 ‘전단계 간접세(prior stage indirect taxes)’란 상품생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누적(cumulative) 간접세란 어느 특정 생산 단계에서 과세된 상품과 서비스가 기 과세분에 대한 공제 제도 없이 다음 생산단계에 추가로 투입되어 과세되는 간접세의 누계를 말한다.

그런데 수출상품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대한 간접세에 대해 과도한 할인 또는 과잉환급이 발생하여 금지대상 수출보조금이 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판정하는 조사당국에서는 먼저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 및 그 양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 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 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조사 사항들 중 어느 하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세환급제도

SCM협정 부속서 1.9(Annex 1(i))에 따르면,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도 금지대상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수입과징금’이란 관세, 조세 및 기타 재정적 과징금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관세환급으로 인해 금지대상 수출보조금으로 제소될 경우에는, 조사당국은 이를 관리하는 제도의 유무, 절차적 합리성 및 정책 효과 등의 기준을 조사하고, 어느 하나라도 미흡시 이를 재조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생산에 소비된 특정 투입요소의 양을 결정할 때에는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을 고려해야 하고, 조사당국은 생산과정, 수출국 산업의 평균적 경험, 기타 기술적 요소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폐기물이 관세 할인 또는 경감에 포함되는 용도의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

(5) 수입대체보조금

앞서 예시된 관세환급제도는 수입대체 보조금의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및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서 일정량을 일정기간(2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수입투입요소에 부과되었던 수입과징금을 경감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SCM협정 부속서 1.9(Annex 1(i))). 이처럼 수입 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 환급이 국내 투입요소의 대체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대체환급제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체환급제도는 SCM 부속서 3에 따라서 금지대상 수출보조금 여부를 판정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SCM 부속서 3에 따르면, 국내시장의 투입요소가 대체되는 수입 요소와 동일한 양·동일의 품질과 성격일 경우 수출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로서 수입요소를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과징금의 환급이 당초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수출회원국 정부가 이를 입증하고 보증해야 한다.

이와 달리 대체환급금이 과잉환급되고 있다고 주장될 경우에는 조사당국은 해당 수출회원국 정부의 합리적 검증 절차 유무, 정책 효과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재검사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3) 기타 조세제도

SCM 협정상 금지대상의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조세제도는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 혹은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이중 조치가능보조금은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보조금 혹은 조세제도로서, 상대국에 부정적 효과를 준

8) 이와 관련해서는 SCM 협정 부속서 2.2.5 참조.

9) SCM협정 부속서 3.2.1 참조.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통상분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SCM협정 PART 3).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산조세제도가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거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회원국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통상분쟁 대상의 조세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정 요건하에서 적용되는 수산조세제도는 일종의 허용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입 가능한 제도라 할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검토한 WTO SCM(보조금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이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원제도는 금지보조금이며, 또 하나는 수출입 관계에 있는 WTO 회원국간 일국의 조세지원이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조세지원 제도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통상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2-1> WTO SCM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 조세

구 분	내 용	비 고
직접세 지원	기업이 지불하는 직접세를 명시적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하는 제도	‘직접세’란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사용료 혹은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함
	직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소비를 위한 생산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세액공제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실적)과 직접 관련되는 특별공제	내수용 물품 생산자에 대한 직접세 세액공제보다 수출용 물품 생산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 크면 금지대상 수출보조금으로 규정
간접세 지원	수출용 생산물에 대한 판매, 소비, 매출, 부가가치, 면허, 인지, 이전, 재고 및 설비 등에 대한 조세, 국경세 등의 간접세(=직접세와 수입과징금을 제외한 모든 조세)를 특혜성으로 할인하는 것	①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유통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해서 수출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 또는 경감(특혜성 간접세 할인제도=수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 과다 환급)

<표 2-1>

WTO SCM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 조세 - 계속

구 분	내 용	비 고
간접세 지원		②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유통에 부과되는 동종의 전단계(prior stage) 누적간접세 ¹⁾ 의 면제, 경감 혹은 유예를 초과해서 수출품 전 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혹은 유예를 실시하는 등의 특별 할인제도
수입과징금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투입)된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 (=관세환급제도)	‘수입과징금’이란 관세, 조세 및 기타 재정적 과징금을 의미함
	수입투입요소에 부과되었던 수입과징금을 경감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 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 환급이 국내 투입요소의 대체 목적으로 사용(대체환급제도)되는 경우, 금지대상 수출보조금 여부를 판정반도록 규정	대체환급을 위해서는 수입과징금의 환급이 당초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수출회원국 정부가 이를 입증하고 보증해야 함
타 회원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조세에 대한 상계가능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은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보조금 혹은 조세지원제도로서, 상대국에 부정적 효과를 준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통상분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	① 일국의 수산조세 제도가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거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경우 ② 다른 회원국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통상분쟁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가 될 수 있음 단,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정 요건하에서 적용되는 수산부문 조세 지원제도는 허용보조금임

주 : 1) 전단계 간접세(indirect taxes)란 상품생산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 조세를 말하며, 누적(cumulative) 간접세란 어느 특정 생산 단계에서 과세된 상품과 서비스가 기 과세분에 대한 공제제도 없이 다음 생산단계에 추가로 투입되어 과세되는 간접세의 누계를 말함

자료 : WTO SCM ANNEX 1.

그런데 현재 협상과정에 있는 WTO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에서 최우선 과제는 수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이다. 이 보조금에 대한 정의는 WTO SCM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정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WTO는 2001년 11월에 DDA를 합의하였으며, 이 아젠다 및 WTO SCM에 의거 추진된 수산보조금 협상이 잠시 중단된 바 있으나 (2006년 7월), 2007년 1월부터 다시 재개되어 수산보조금 협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뉴질랜드 등의 FFG 국가들은 비용절감형 보조금 등(연료, 얼음 등) 주요 보조금의 금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료용 면세류는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산조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설정된 보조금 협정(SCM)과 이행을 위한 논의 동향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수산세제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수산물에 대한 비용감소 역할을 하는 조세지원이나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통상분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수산부문 조세체계와 운영 실태

1. 수산업 부문 조세 관련 법체계

1) 조세 관련 법체계

우리나라의 조세 관련 법체계는 <그림 3-1>과 같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나누어진다.

절차법은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요 절차법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 절차법 등 6개 법률이 있다. 이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¹⁰⁾은 법체계상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세의 감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¹¹⁾함으로써 수산업 조세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실체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체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법률이 있다. 실체법상의 국세와 지방세는 각 조세마다 그 조세를 규정하고 있는 고유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되고 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당이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¹²⁾, 종합부동산세법 등 13개가 있고, 관세와 관련된 관세법¹³⁾이 있다. 그리고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등을 정의한 지방세법이 있다.

수산조세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절차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실체법에는 국세법 12개, 지방세법 1개에 정의되어 있다(<그림 3-1>, <그림 3-2> 참조).

10)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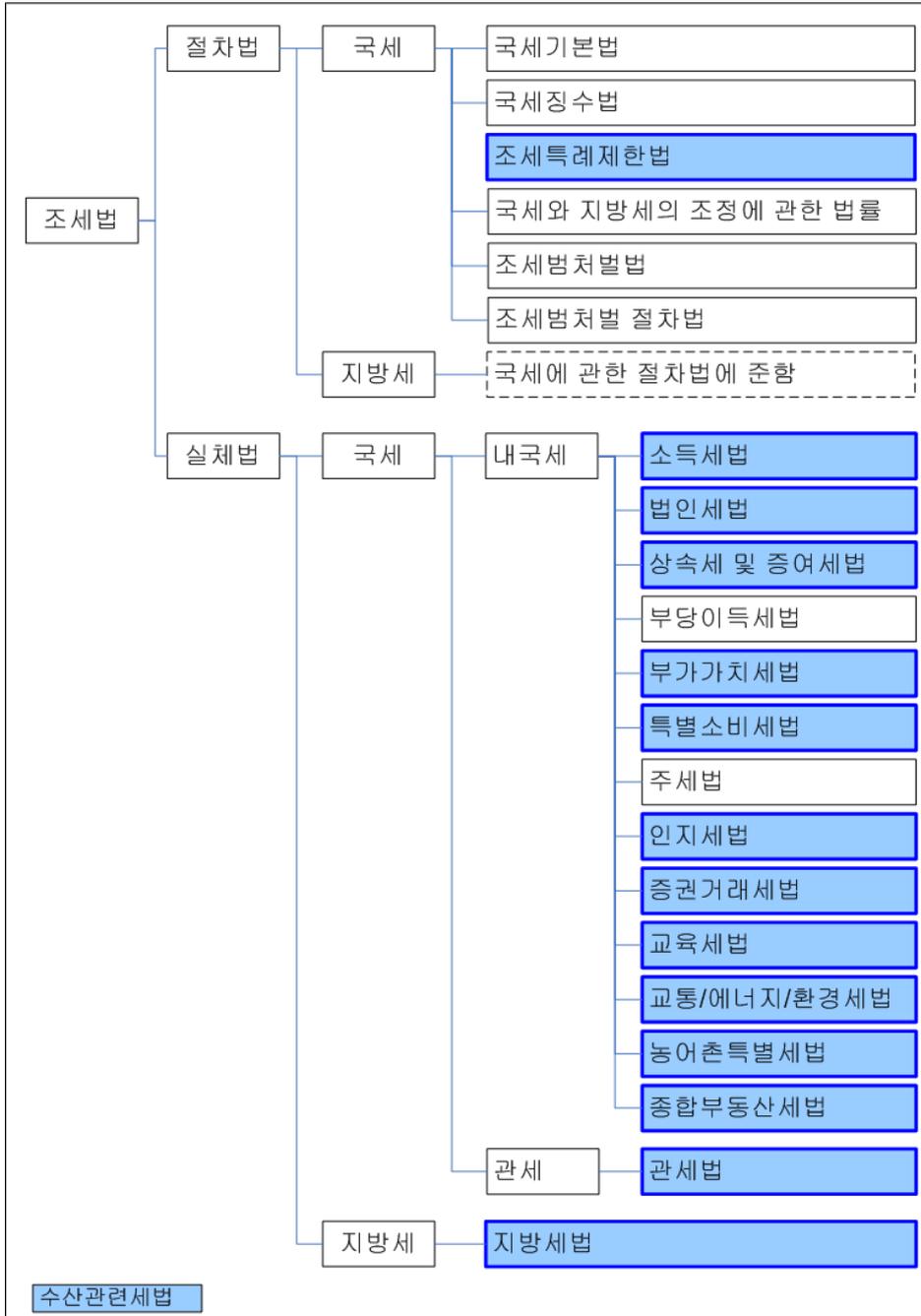
11)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소득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내국세는 물론이고 관세와 지방세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2)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13)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수출입물품과 통관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수산관련 세법의 법률체계

<그림 3-1>



<그림 3-2>

수산관련 지방세법



수산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국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2개이다.

지방세법 상 수산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세제 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주행세, 면허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8개가 있다.

2) 수산조세의 분류기준별 세목

수산조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부문의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산조세관련 법률을 과세주체(국세, 지방세) 및 관련업종별(어선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수협, 영어조합법인)로 분류하였다.

<표 3-1> 수산조세의 분류기준별 세목

업종별 과세주체		어선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수협	영어조합법인
국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등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등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등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세	관세	관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주행세, 면허세 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주행세, 면허세 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행세 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목적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사업소세	

어선어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조세는 소득세·법인세·인지세·관세 등 국세부문 11개 세목,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 8개 세목의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다.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는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국세부문 9개 세목, 취득세·등록세 등 4개 세목의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다. 수협 관련 조세는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국세부문 7개 세목, 취득세·등록세·사업소세 등 4개 세목의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다. 영어조합법 관련 조세는 소득세·법인세 등 5개 세목, 취득세·등록세 등 3개 세목의 지방세법과 관련이 있다

2. 수산조세정책의 변천과 조세지원 현황

1) 수산조세정책의 변천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초기에는 특정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최근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1) 근대적 농림수산 조세 세법의 시초

갑오개혁(1894년)이후 국가 예산서를 매년마다 작성하면서 조세 변천과정과 조세 수입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수산업 고유의 조세로 잡세에 해당하는 수세(水稅)와 어염선세(漁鹽船稅) 등이 있었다. 수산부문에 있어서 근대적 세법의 시초는 1895년(고종 32년)에 법률 제15호 제정·공포된 「지세(地稅) 급(及) 호포전(戶布錢)에 관한 건(件)」이다.

(2) 1950년대

1950년에는 염전 등에 대한 지세에 관하여 과세를 했다. 그리고 1954~1957년에는 지방세 중 어업세가 부과되었다.

(3) 1960년대

1960년대는 경제개발 초기로서 우리나라 세제지원방향은 국가가 정한 전략육성 산업인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 수산관련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1960년 12월에는 지세가 폐지되고 국세로서 토지세가 신설되었다. 그 이듬해 12월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세인 토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었다.

(4) 197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방향은 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산업 등 주요 산업으로 책정된 사업에 각종 감면을 적용하고 수출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세금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 수산관련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1976년에 수산업협동조합 등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했다. 그리고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5) 198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의 세제지원 방향은 특정산업 지원 위주에서 기능중심(설비투자, 기술인력개발, 중소기업육성, 외화획득 등)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수산관련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1989년에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이 적용되었다.

(6) 1990년대

1990년대 우리나라 세제지원 방향은 조세감면의 통제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비롯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수산관련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1996년 12월 연근해와 내수면어업용 수산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어 상속 공제액이 확대 시행되었다. 그리고 WTO/DDA 및 FTA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철폐 및 수산물 관세 대폭 인하가 추진되어 왔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999년 12월 28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인 등이 지급받는 지원금과 어선원이 받는 실업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 감면내용이 신설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신설).

(7) 200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 세제지원 방향은 연구개발·중소벤처기업 지원·외국인 투자 촉진 등 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전반적으로 조세감면 축소를 위하여 적용내용·대상을 명확화하고 적용비율 등이 축소되고 있다. 2001년 12월 29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있어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신설). 또한 2001년 12월 29일 종전에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해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어선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개정).

2) 수산업 부문 조세지원 현황

수산업 부문의 조세 지원규모 및 내용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조세지원 규모 및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료는 입수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산조세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파악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수산부문 조세감면 혜택은 총 8,342억원이며, 이중 국세는 8,282억원(99.3%), 지방세는 60억원(0.7%)이다.

<표 3-2>

국세부분 수산조세 감면현황

혜택 순위	감면혜택(억원)		국세부분 조세감면 내용	감면대상 업종
	금액	비중		
1	7,092	85.6%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	어선어업, 양식업
2	433	5.2%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228	2.8%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출자배당금·예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어선어업, 양식업
4	118	1.4%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용토지를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어업경영·어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	107	1.3%	수협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6	102	1.2%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어선어업, 양식업
7	77	0.9%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율 적용 특례	수협
8	47	0.6%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인정 특례	수협중앙회
9	47	0.6%	수협중앙회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비과세	수협중앙회
10	24	0.3%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출자배당금·예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어선어업, 양식업
11	3	0.04%	어민이 직접수입하는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어선어업, 양식업
12	3	0.04%	수협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1)	수협(조합, 중앙회)
13	1	0.01%	조합원이 수협으로부터 용자(5천만원 이하)시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어선어업, 양식업
			수협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수협

주(1) : ①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②수협중앙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③수협중앙회의 회원지원사업·신용사업용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④수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⑤수협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재산등기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⑥수협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에 대한 농특세비과세.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파악이 가능한 부분만 산정한 것임).

국세 중 수산조세감면 혜택이 가장 큰 부문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감면’으로 2006년 기준 수산조세 국세부문 총 감면혜택의 85.6% (7,09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국세부문 총 감면혜택의 5.2%(433억원)인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 적용’이다. 수산조세의 국세부문은 95.2%(7,883억원)가 어선어업 및 양식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중 수산조세감면 혜택이 가장 큰 부문은 ‘수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2006년 기준 수산조세 지방세부문 총 감면혜택의 63.3%(3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지방세 부문 총 감면혜택의 15.0%(9억원)을 차지한 ‘수협중앙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이다. 수산조세의 지방세 부문은 95.0% (57억원)가 수협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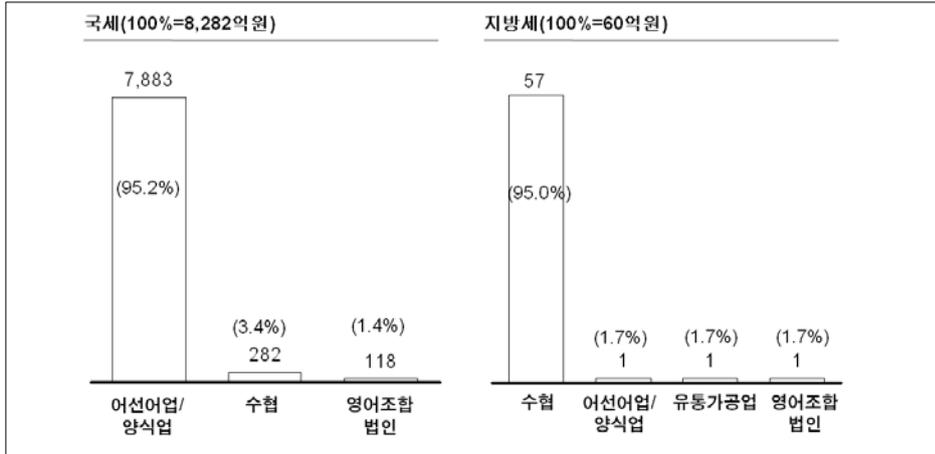
지방세 부문 수산조세 감면현황

혜택 순위	감면혜택(억원)		지방세 부문 조세감면 내용	감면대상 업종
	금액	비중		
1	38	63.3%	수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수협
2	9	15.0%	수협중앙회가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수협중앙회
3	7	11.7%	수협중앙회의 회원지원사업·신용사업용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수협중앙회
4	1	1.7%	수협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재산등기의 등록세 면제	수협
5	1	1.7%	수협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 경감	수협
6	1	1.7%	영어자금 등의 용자시 필요한 담보물 설정 등기시 등록세 면제	어선어업, 양식업
7	1	1.7%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유통가공업
8	1	1.7%	영어조합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영어조합 법인
9	1	1.7%	수협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	수협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파악이 가능한 부분만 산정한 것임).

업종별 조세지원 현황(2006년 기준)

<그림 3-3>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파악이 가능한 부분만 산정한 것임).

3. 수산업 부문별 조세감면제도 현황

수산조세 법률 분석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493호), 소득세법(법률 제8435호), 법인세법(법률 제8141호), 상속세·증여세법(법률 제8435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8142호), 특별소비세법(법률 제8139호), 인지세법(법률 제8343호), 증권거래세법(법률 제8139호), 교육세법(법률 제813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8138호),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8139호),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8435호), 관세법(법률 제8367호), 지방세법(법률 제8491호),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8360호),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8466호)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어선어업 및 양식업 부문과 관련된 지원세제는 <그림 3-4>와 같이 국세는 소득세법 등 11개이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 8개 부분이다.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그림 3-4>

국세	소득세법	a.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b.어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어선어업만 해당) c.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d.중소기업(어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e.어업협정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 감면 f.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g.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출자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감면 h.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감면 i.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농어촌특별세 감면 j.지방세법상 어업권/어선/영어자금/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k.지방세법상 천재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a.사망한 어민이 상속하는 어선/어업권에 대한 상속세기초공제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a.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b.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c.어민이 직접수입하는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d.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e.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어선어업에만 해당)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인지세법	a.수협 등에서의 용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b.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설정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a.어촌공가 및 소형어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관세법	a.우리나라선박이 외국영역에서 포획/채집한 수산물 등의 면세(어선어업에만 해당)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a.천재로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 b.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어선어업권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감면 c.자영어민들의 어선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 d.영어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등록세 면제 e.어촌공가에 대한 재산세 면제 f.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감면
재산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a.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 b.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주행세		a.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주행세 감면	
면허세		a.어업권, 건축물에 대한 면허 변경 시 면허세 면제	
사업소세		a.수산업 사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1) 국세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a) 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가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수산에 있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 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두 가지의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첫째는 <표 3-4>의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둘째는 <표 3-4>에 해당하는 소득외의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말한다.

<표 3-4>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 모	비 고
젖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	10,000마리	
오리	10,000마리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b) 어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및 원양어선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에 대한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연근해어선원(일용근로자 포함)이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원양어선원이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3항).

(c)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일몰기간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계약이 만료되는 날(2009년말)까지이다(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 부칙 제17조). 가입대상 어민의 범위는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자이다.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 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이며, 저소득어민(동력선을 보유하지 못한 어민)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20만원이다. 그리고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다(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첫째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월납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월 이상, 분기납저축 및 반년납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한 때, 둘째는 5년 만기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목돈마련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 셋째는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하여 정부의 농업소득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때이다(농어가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d) 중소기업(어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중소기업(어업분야)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간은 2008년 12월 31일이다.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4743호 제2조 유효기간). 감면내용은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어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몰기간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비율은 <표 3-5>와 같다. 어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별표 1). 그리고 어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

<표 3-5> **중소기업(어업 등)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

구 모	수도권내	수도권외 지역
소기업	20%	30%
중기업	-	15%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e)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감면내용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자 등이 지급받는 지원금¹⁴⁾과 어선원이 받는 실업지원금(임금의 6개월분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업자 등이 일몰기간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어업보조금)은 당해 어업자 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f)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¹⁵⁾,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제도의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감면내용은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일용근로자를 제외)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일몰기간까지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14) 지원금의 내용(지급기준)은 첫째는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둘째는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비용이다(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 제1항).
- 15)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등).

또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g) 조합원 등이 받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어민을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5)의 출자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출자금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배당금까지이다. 또한 그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h) 조합원이 받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등(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농어촌특별세 제4조 제12호)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어민을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3조의3)의 예탁금이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농어촌특별세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한다는 것이다. 소득세 저율과세는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하고 예탁금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일 경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표 3-6>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기간별 감면세율

기 간	2007.1.1~2009.12.31	2010.1.1~2010.12.31	2011.1.1~
소득세 감면세율	비과세	5%	9%

(i)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

어조합법인으로부터 일몰기간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또한 일몰기간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세율은 5%로 하며, 농어촌특별세와 주민세는 면제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j) 지방세법상의 어민의 어업권, 어선, 영어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¹⁶⁾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어민 또는 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영어조합법인 포함)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세법 제262조, 제264조 제1항, 제26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내용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째 지방세법의 ‘자영어민등의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지방세법 제267조 제1항~2항)’, 둘째 ‘영어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4조 제1항)’, 셋째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감면(지방세법 제262조 제2항)’, 넷째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소득중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한 것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일몰기간은 모두 2014년 6월 30일까지이다.

(k) 지방세법상의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¹⁷⁾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 제1항의 감면내용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16)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제도 중 지방세 부분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감면 부분 (c), (d), (f)와 주민세감면 부분 (a) 참조.

17)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제도 중 지방세 부분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감면 부분 (a) 참조.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선박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의2조 제1항)’한 것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이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a) 사망한 어민이 상속하는 어선 및 어업권에 대한 상속세 기초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되는 어선 및 어업권에 대한 상속세 기초 공제의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어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어선 및 어업권¹⁸⁾에 대한 영어상속재산가액을 2억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어에 종사한 경우로서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에 거주(그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어에 종사한 경우로서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에 거주(그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영어후계자¹⁹⁾이어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③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감면

(a)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항)

일몰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서 이때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면내용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네 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는 개인이고, 둘째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며, 셋째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양어용사료를

18) 어선(어선법 규정), 어업권(내수면어업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 공동어업의 경우 제외).

19)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및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공급받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주업법인²⁰⁾을 말한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대상 어업용기자재는 첫째,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 둘째, <표 3-7>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해당된다.

<표 3-7>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18. 어선용 레이더
2. 부자	19. 위성항법장치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 · 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4. 자동조상기	21. 어군탐지기
5. 양망기	22. 어선용 냉동기
6. 양승기	23. 어망감시기
7. 통발	24. 샤클(Shackle)
8. 초호	25. 코스(Course)
9. 낚시	26. 삭제 <2003.12.30>
10. 연승	27. 전개판
11. 발장	28. 물뚝(Sea Anchor)
12. 해녀용 잠수복 · 잠수복지 · 물안경 및 태약	29. 양식용수차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30. 김양식용유기산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31. 팜사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32. 진주양식용핵
16. 선박용 기관	33. 양식용양수기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34. 양식용약품
	35. 패각분쇄기
	36. 삭제 <2003.12.30>
	37. 어선용 호중
	38. 삭제 <2003.12.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자료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20) 해당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2이상을 개인 · 영어조합법인 · 어촌계에 해당하는 자 혹은 해당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b)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²¹⁾로서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의2).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민은 개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이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는 <표 3-8>과 같다.

<표 3-8>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9. 구멍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10.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12. 양어장용 차광막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14. 자동조타장치

자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별표6.

(c)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2항 제9호)

일몰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몰기간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면내용은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및 어촌계, 어업주업법인 등)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기자재 중 <표 3-7>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d) 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면세유가 적용되는 일몰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면세석

21)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함.

유류 적용대상 어민이 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하여 첫째,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고 둘째,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75%를 감면한다는 것이다(개정 2007.6.1). 어업용 대표 유종별 세액 및 세율은 <표 3-9>와 같다.

<표 3-9>

어업용 대표 유종별 세액 및 세율

구분	계	교통세 (a)	주행세 (b)	특소세 (c)	교육세 (d)	부가세
세율	원/ℓ당	법령 정액	a× 21.5%	법령 정액	a(경/휘발유)×15%, c(중유)×15%	(a+b+c+d)× 10%
경유	527.03	351	75.47	-	52.65	47.91
휘발유	789.79	526	113.09	-	78.90	71.80
중유	21.51	-	0.00	17	2.55	1.96

자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제8138호) 제2조 제1항·제3항/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제3조의2, 지방세법(법률8491호) 제196조의17, 특별소비세법(법률제8139호) 제1조 제2항 제4호, 교육세법(법률제8137호) 제3조 제2~3호/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법률8142호) 제13조 제4항/제14조.

면세유 적용대상 어민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이 해당된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

어업용 면세유류란 첫째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둘째는 나잡어업종 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셋째는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표 3-10>의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시설, 넷째는 「어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다섯째는 「남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남시어선업용 선박, 여섯째 내수면어업용 선박, 마지막으로 내수면 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함)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이다(농·축산·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5조 제1항).

<표 3-10>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시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 건조시설 2. 멸치 자숙·건조시설 3.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새우 자숙·건조시설 6. 패류 자숙시설 7.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8. 「수산업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9.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

자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령 제7조 별표1

(e)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²²⁾(부가가치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④ 인지세 감면

(a) 수협 등에서 용자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조세 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때까지 작성하는 서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하여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22)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변경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때까지 작성하는 서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면내용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라 지원되는 영어규모의 확대사업²³⁾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⑤ 종합부동산세 감면

(a) 어촌공가 및 소형어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²⁴⁾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는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경감(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의 ‘어촌공가에 대한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제265조)’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감면(지방세법 제262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

⑥ 관세 감면

(a)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영역에서 포획·채집한 수산물 등의 면세(관세법 제93조 제5~8호)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제5호), 둘째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해외수역에서 채집 또는 포획²⁵⁾한 수산물(제6호), 셋째는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외국인과의 합작(총지분의 49% 이상을 확보)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제7호), 넷째는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23)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

24)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제도 중 지방세 부분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감면 부분 (e), (f) 참조.

25)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외국의 선박과 협력(제6호와 제7호 규정)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포장한 골판지 어상자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해당된다(제8호).

(2) 지방세

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면제

(a) 천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선박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의2조 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개수, 선박을 건조·수선,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단, 건축물은 종전의 연면적 이내, 선박은 종전의 톤수 이하, 자동차 및 기계장치는 종전의 신제품 구입가액 이내여야 한다.

(b)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 취득한 어선·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의2조 제2항)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선박·어업권 등을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부동산·선박·어업권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단,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지역에서 부동산·선박·어업권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새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선박·어업권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선박·어업권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c) 자영어민 등의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지방세법 제267조 제1~2항)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²⁶⁾,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26)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결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이 지역과 연결한 구·

재학생이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한다는 것이다. 단, 출월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기준은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이고, 소유어선 규모가 30톤 이하, 소유어장 규모가 10ha 이내일 경우이다(지방세법시행령 제222조 제2항).

일반적으로 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의 등록세는 <표 3-11>과 같다. <표 3-11>의 제1호~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2조).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표 3-12>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42조).

<표 3-11>

선박등기의 등록세율

구 분(제1항각호)	세 율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0.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선박가액의 1.0%
3. 선박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0.2%
4. 제1호~제3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선박가액의 1.0%
5. 제1호~제4호 외의 등기	매1건당 7,500원

<표 3-12>

어업권 등록의 등록세율

구 분(각호)	세 율	
1. 어업권의 이전	상 속	매1건당 3,000원
	상속이외	매1건당 23,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상 속	매1건당 1,500원
	상속이외	매1건당 12,0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1건당 4,500원

(d) 영어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4조 제1항)

등록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에서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시·읍·면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선·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e) 어촌공가에 대한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제265조)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감면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f)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감면(지방세법 제262조 제2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감면내용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② 주민세 감면

(a)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소득중 1,2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민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²⁷⁾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1,200만원 초과 세액에 대해서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b)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농어촌특별세 제4조 제12호)²⁸⁾’ 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7)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국세부분의 소득세법·법인세법·농어촌특별세법 감면 부분 (i) 참조.

28) 어선어업 및 양식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국세부분의 소득세법·법인세법·농어촌특별세법 감면 부분 (h) 참조.

③ 주행세 감면

(a)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주행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면세유가 적용되는 일몰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이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석유에 대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75%를 감면한다는 것이다(개정 2007.6.1).

④ 면허세 감면

(a) 어업권, 건축물에 대한 면허 변경 시 면허세 면제(지방세법 제163조)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어업권에 관한 면허증 설정을 제외한 등록 및 천해·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이내에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⑤ 사업소세 감면

(a) 수산업 사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감면내용은 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과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2)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수산유통가공업 분야의 조세지원내용은 <그림 3-5>와 같이 국세부분은 소득세법 등 9개 법률에 정의되어 있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 4개 세목에 규정되어 있다.

(1) 국세

①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a)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일몰기간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정보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수산유통 · 가공 관련 조세감면제도

<그림 3-5>

국세	소득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중소기업 정보시스템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 b.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c. 환경/안전설비(유통산업합리화시설 등) 투자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감면 d. 공동전산망 이용한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감면 e. 수산물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f.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g.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h.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창업중소기업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감면 i. 중소기업(제조/물류/도소매등)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감면 j.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감면 k. 연구인력개발/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감면 l. 기술이전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감면 m.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이전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감면 n.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감면 o. 고용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농어촌특별세면제 q. 외국인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세/농어촌특별세감면 r. 지방세법상 천재로 인해 대체취득한 건축물/기계장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미가공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b. 면세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용역의 의제매입세 감면혜택 c. 가공시설에 공급되는 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우리선박이 외국영역에서 포획/채집/가공/제조한 수산물 수입시 면세 b. 국내에서 제작하기 힘든 공장자동화기계 등의 수입시 관세 면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행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가공시설에 공급되는 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주행세 등 감면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정보시스템에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생산공정 정보화 시스템, 공동구매 등 기업 간 정보공유시스템, 인사·급여·자재조달·물류 등 단위업무 통합시스템 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이 있다. 대상중소기업의 규모는 <표 3-13>과 같다.

중소기업의 기준

<표 3-13>

해당업종	중기업 규모기준	소기업 규모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어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도매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대형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별표1), 제8조.

(b)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2항)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다. 감면내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설비에 대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고, 둘째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에는 공정개선·자동화시설(<표 3-14> 참조), 첨단기술설비(<표 3-15> 참조),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가 있다.

(c) 환경·안전설비(유통산업합리화시설 등) 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환경·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감면대상은 제조업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 우수체인사업자,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이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여기서 우수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체인사업종류별 규모가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최근 6개월간의 체인사업경영개선실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표 3-14>

구 분	적 용 범 위
컴퓨터 및 제어설비	1.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2.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공정제어시스템 3. 컴퓨터 단말기·키보드 및 마우스 4.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 등
가공 및 생산자동화를 위한 설비	1. 자동성형·소성·절단 등 생산 및 가공설비(재료의 절단형태·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절단기 및 자동재단기 등) 2. 자동세척·건조·염색설비 (1) 정전기·전자·초음파·화학세척제 또는 스팀을 이용한 자동세척기 (2) 적외선·자외선·마이크로웨이브 또는 스팀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일관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동건조장치 3. 자동분쇄·혼합·분리설비 등 (1) 재료의 입출·분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분쇄기 (2) 원료의 배합·반응 또는 이물질의 분리·여과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기 및 장치
원료·부품 등의 연속·반복공급 및 이송설비	1. 생산공정에서 액체·분체·고형물질 및 이들의 혼합체(페이스트 포함)를 자동으로 일정량씩 공급하는 정량공급장치 2. 가공물의 공정간 이송을 자동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속도나 수량의 제어장치를 갖춘 자동이송장치 3. 원료·원자재·부품 또는 완제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반송시스템 등
자동계측·계량설비	1.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2.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자동보관설비 등	1. 원료·원자재·부품·완제품을 보관·저장·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재정리.

첨단기술설비

<표 3-15>

구 분	적 용 범 위
생산자동화설비·제어설비	1.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2.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합성장치·부속설비 등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1.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등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1.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등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2 재정리.

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기관²⁹⁾이 실시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7조).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는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 집배송시설의 면적이 1,500m²이상, 3개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3~100개 미만의 법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도매하거나 공급하고, 그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정보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다. 단,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는 최근 6개월간 총 매입액 중 1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총매출액 중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0% 미만이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7조 제2~3항).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유통정보시스템구축, 유통표준코드의 도입,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인증물류설비 등을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 제2항).

두 번째 감면대상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인 재활용시설이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세 번째 감면대상은 청정생산시설이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관련된 시설은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시설,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과 관련된 시설,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와 관련된 시설 등이다.

29) 직영점의 평가기관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프랜차이즈형의 평가기관은 한국편의점협회, 임의가맹점형의 평가기관은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조합형의 평가기관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임.

네 번째 감면대상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대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식품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이다(식품위생법 제32조의2).

<표 3-16>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구 분	적 용 범 위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 장비가 된 것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컨베이어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 포함)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함)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봇식 파렛타이저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지게차,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크레인·하버크레인,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반출하는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새시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
무선상품리더기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 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재정리.

<표 3-17>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

체인사업종류	지정기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체인점포
직영점형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포 5개 이상 보유
프랜차이즈형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포 14개 이상 보유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시범소매 점포 1개 이상 보유
임의가맹점형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점포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포 20개 이상 보유
조합형	출자금 1억원 이상	○가맹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1천m ² 이상

자료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

<표 3-18>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5등급)
상품활동	① 가맹점의 본부공급비율이 30%(프랜차이즈형은 70%) 이상 되는가?	2~10점
	② 가맹점에 상품이 적시에 공급되고 있는가?	1~5점
지도활동	③ 가맹점의 판매기법향상을 위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2~10점
	④ 가맹점의 일상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가?	1~5점
교육활동	⑤ 가맹점주를 위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	1~5점
판매촉진 활동	⑥ 통일된 이미지의 로고 및 간판·점포외장 등을 갖추고 이를 적용한 가맹점이 있는가?	2~10점
	⑦ 로고 및 간판·점포외장 등의 점포안의 시설배치 등에 대한 가맹점 지도활동 실적이 있는가?	1~5점
	⑧ 점포내 광고·포장지·선전물 등의 공동제작 및 배포실적이 있는가?	1~5점
정보활동	⑨ 가맹점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10점
집중관리 활동	⑩ 가맹점의 세무 및 기장지도나 세무업무 대행실적이 있는가?	1~5점
보관시설	⑪ 가맹점·본부·제조업체간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집배송시설 또는 집배송센터를 갖추고 있는가?	1~5점
배송차량	⑫ 본부공급 예상물동량을 배송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차량은 확보되어 있는가?	1~5점
전산시스템	⑬ 본부업무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거나 1년 이내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1~5점
시범점포	⑭ 시범점포운영성과를 가맹점 운영에 반영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시범점포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1~5점
전문요원	⑮ 가맹점지도를 위한 판매관리사 등의 전문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2~10점

자료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2 재정리.

(d)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일몰기간은 2007년 12월 31일이다. 감면내용은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위탁운임 및 수수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e) 수산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가공사업을 포함한 수산물(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9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f)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제1항)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³⁰⁾을 일몰기간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가물류시설의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³¹⁾’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g)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일몰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내국법인이 일몰기간까지 합병(분할합병 포함)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30) 자가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의4 제1항, 화물유통촉진법제2조 제5호).

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름.

(h)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4743호 제2조 유효기간). 감면내용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면제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조업, 물류산업(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파렛트임대업 등)이 해당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i) 중소기업(제조업, 물류산업, 도·소매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간은 2008년 12월 31일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제조업, 물류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몰기간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면제한다는 것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비율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중소기업(어업 등)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비율**

규 모		수도권내	수도권외 지역
도·소매업	소기업	10%	10%
	중기업	-	5%
제조업, 물류산업	소기업	20%	30%
	중기업	-	15%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j)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중 <표 3-20>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수산물 관련 연구개발비 내용³²⁾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3~4호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표 3-2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 분	연구·인력개발비용
기술개발	1.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임차 등의 비용 2.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대학·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② 대학·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3.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4.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등
인력개발	1.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에(의) 위탁훈련비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3.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등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재정리.

32)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르면 가공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현재 조세 관련한 언급이 없는 상태임. 수산물 가공업에는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등이 해당되며, 가공기술개발에는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기술의 개발,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저장용기 및 포장기술 개발, 노동력의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용 기계의 개발 등이 속함(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을 바탕으로 재작성).

수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제금액은 첫째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둘째는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k) 연구·인력개발 및 신기술 도입 시설 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수산물관련 신기술 도입 내용³³⁾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6호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공시설의 개선 또는 새로운 가공기술을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6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5호).

(l) 기술이전 금액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내국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단, 공제금액의 최대한도는 소득세 또는

3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르면 가공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현재 조세 관련한 언급이 없는 상태임.

법인세의 10%이다. 수산물 관련 기술이전 내용³⁴⁾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2호에 언급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전통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을 전수·발전시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m)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한 해의 6년 후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업체이다.

(n)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첫째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가 20만명 미만인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둘째 개발촉진지구

34)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르면 가공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현재 조세 관련한 언급이 없는 상태임.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가 20만명 미만인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이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1조).

(o) 고용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소득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물류산업 등³⁵⁾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p) 외국인근로자의 총급여액 등에 대한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세액할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q) 지방세법상 천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기계장비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³⁶⁾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제1항의 감면내용에 대하여

35) 물류산업 외에 기술집약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이 해당됨.

36)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지방세 부분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부분 (a) 참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세법 내용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감면내용은 ‘천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기계장비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의2조 제1항)’한 것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r) 지방세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³⁷⁾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에 따르면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법 275조의 감면내용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감면내용은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75조)’한 것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②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감면

(a) 미가공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생선류(고래류 포함), 패류, 해조류, 기타 식용 수산물 등 미가공식품(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식용은 아니지만 원생산물, 원시가공을 거친 것,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b) 면세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용역의 의제매입세 감면혜택(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에 일정한 공제율(102분의 2)³⁸⁾에 상당

37)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지방세 부분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부분 (c) 참조.

38) 음식점업의 경우 공제세율은 103분의 3이고, 음식점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공제세율은 106분의 6임.

<표 3-2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생선류	0301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511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뚝·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기타 수산식료품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자료 : 부가가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재정리.

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부가가치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c) 가공시설에 공급되는 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면세유가 적용되는 일몰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이 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하여 첫째,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고 둘째,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75%를 감면한다는 것이다(개정 2007.6.1). 가공부분과 관련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은 김 건조시설, 멸치 자숙·건조시설,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 새우 자숙·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등이다.

③ 종합부동산세 감면

(a) 유통단지 등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제1~2항)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³⁹⁾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b) 농수산물유통시장, 산업단지내 취득 부동산, 유통단지내 유통사업용 시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감면(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⁴⁰⁾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는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경감(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9) 기타 서비스업용 토지에는 관광호텔용 토지,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 스키장업용 토지, 대중골프장업용 토지가 있음.

40) 수산유통가공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지방세 부분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부분 (d), (e), (f) 참조.

그러므로 지방세법의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 ‘산업단지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276조)’ 및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280조)’의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

④ 관세 감면

(a)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영역에서 포획·채집하여 가공·제조한 수산물의 수입 시 관세 면제(관세법 제93조 제5호)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 선박내에서 가공·제조하여 수입하는 때에는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b)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공장자동화기계 등의 수입 시 관세 면제(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일몰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에는 첫째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인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및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둘째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인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및 물류자동화시스템이 있다. 관세 감면비율은 일몰기간까지 수입 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30%로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50%이다(관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2~3항).

(2) 지방세

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a) 천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기계장비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의2조 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천재·지변·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개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단, 건축물은 종전의 연면적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치는 종전의 신제품 구입가액 이내여야 한다.

**(b)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의2조 제2항)**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을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부동산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단,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지역에서 부동산(농지외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새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또한 농지외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정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을 제외한 곳이다.

**(c)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5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단,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3항).

수산과 관련된 이전대상 공장의 범위는 <표 3-22>와 같다.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첫째,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둘째,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셋째,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 제외) 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하고, 넷째,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표 3-22>

이전대상 공장범위

구 분		공 장 종 류	
음식 료품 제조업	15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512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3 수생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5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15126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15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생동물 가공·저장처리업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섬유 제품 제조업	172 기타섬유제 품제조업	1723 끈, 로프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7231 끈 및 로프 제조업 17232 어망 제조업 1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끈, 로프·끈가공품 제조업

자료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 재정리.

(d) 농수산물유통시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 266조 제1항)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⁴¹⁾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50%(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41) 유통자회사란 농림수협 등이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 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지칭한다.

(e) 산업단지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276조)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첫째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둘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50%를 경감(단,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는 첫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셋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넷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등이다(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

(f) 유통단지 내 유통사업용 시설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280조)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유통단지 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50%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유통단지 안에 설치 가능한 유통시설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 첫째 화물터미널 및 창고, 둘째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넷째, 화물보관·처리시설, 다섯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여섯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일곱째 보세창고,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 시설에 한한다),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 등이다(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또한 유통단지안에 설치가능한 지원시설은 첫째 가공·제조시설(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산지가공지원대상자가 설치하는 가공품생산공장,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을 제외), 기타 제조·가공시설), 둘째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셋째 유통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이다(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② 주행세 감면

(a) 가공시설에 공급되는 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주행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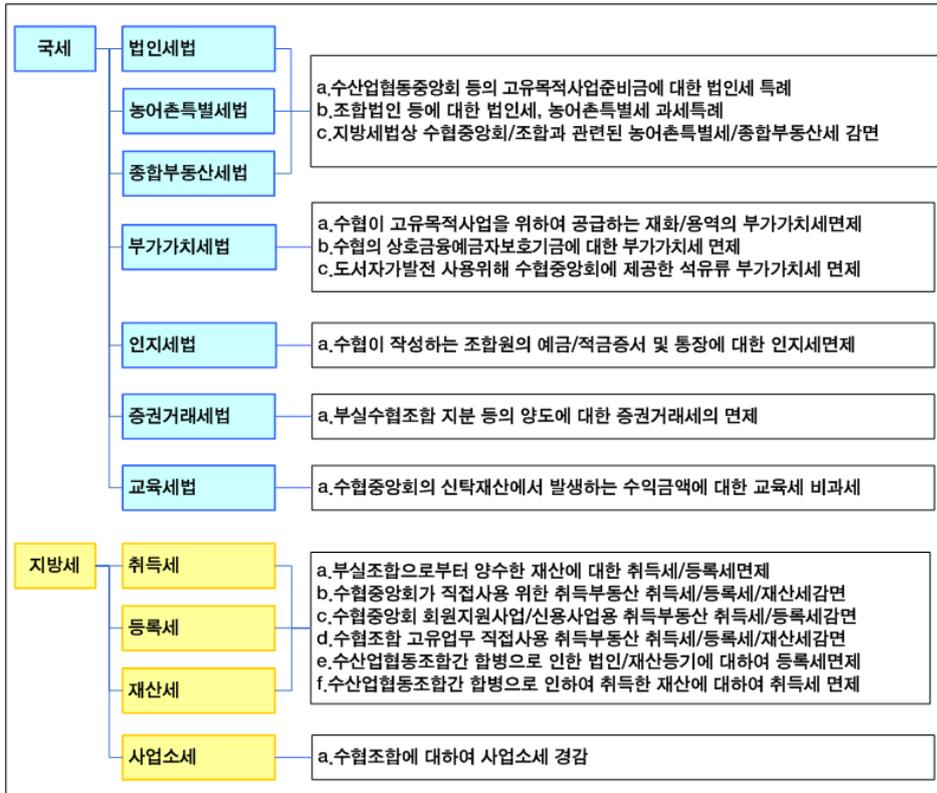
면세유가 적용되는 일몰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이 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하여 첫째,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고 둘째,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75%를 감면한다는 것이다(개정 2007.6.1). 가공부분과 관련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은 김 건조시설, 멸치 자숙·건조시설,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 새우 자숙·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등이다.

3)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조세감면제도

수산업협동조합 부문의 지원세제는 <그림 3-6>과 같이 국세는 법인세법 등 7개 부분이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 4개 부분이다.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조세감면제도

<그림 3-6>



(1) 국세

①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a) 수산업협동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손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일몰기간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⁴²⁾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42) 부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의 고유목적사업 참조.

(b)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제4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때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⁴³⁾를 과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사업연조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당기순이익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장에게 제출하면,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또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지원받는 지원자금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계산시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c) 지방세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제8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⁴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

첫째는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6~27호, 제120조 제1항 제22~2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이고, 둘째는 ‘수협중앙회가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며, 셋째는 ‘수협중앙회가 회원지원사업 및 신용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

43) 수산업협동조합 법인세산출세액=(법인세 등 공제전 당기순이익+기부금 손금불산입액+접대비 손금불산입액)×12%.

44)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지방세부분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부분 (a), (b), (c), (d), (e), (f) 참조.

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이고, 넷째는 ‘수산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면제(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며, 다섯째는 수산업협동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재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지방세법 제283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고, 여섯째는 ‘수산업협동조합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의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의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이다.

② 부가가치세 감면

(a)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육탕업 및 예식장업,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전입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b)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은행업(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부가가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c) 도서지방 등의 자가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제공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로서 이때까지 공급한 석유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면내용은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 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도서지방의 자가 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③ 인지세 감면

(a) 수협 등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때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가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 및 어촌계원의 예금,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④ 증권거래세의 면제

(a) 부실수협조합 지분 등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의2, 제19호의2)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수협조합(부실조합·부실우려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지분을 양도하거나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제7호의2).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제19호의2).

⑤ 교육세 감면

(a) 수협중앙회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비과세(교육세법 제4조)

일몰기간은 없으며, 감면내용은 금융·보험업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교육세법 제4조). 단, 일반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교육세를 부과한다(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2) 지방세

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a)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6~27호, 제120조 제1항 제22~23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은 없다. 감면내용은 수협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 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함)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해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8항,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호)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b)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의 50%를 경감하고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c)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지원사업 및 신용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감면(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고,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적용세율은 첫째 회원의 교육, 지도, 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둘째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d) 수산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e) 수산업협동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재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83조 제1항 제1호)

등록세 면제의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 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f) 수산업협동조합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간은 없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간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② 사업소세 감면

(a)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 경감(지방세법 제266조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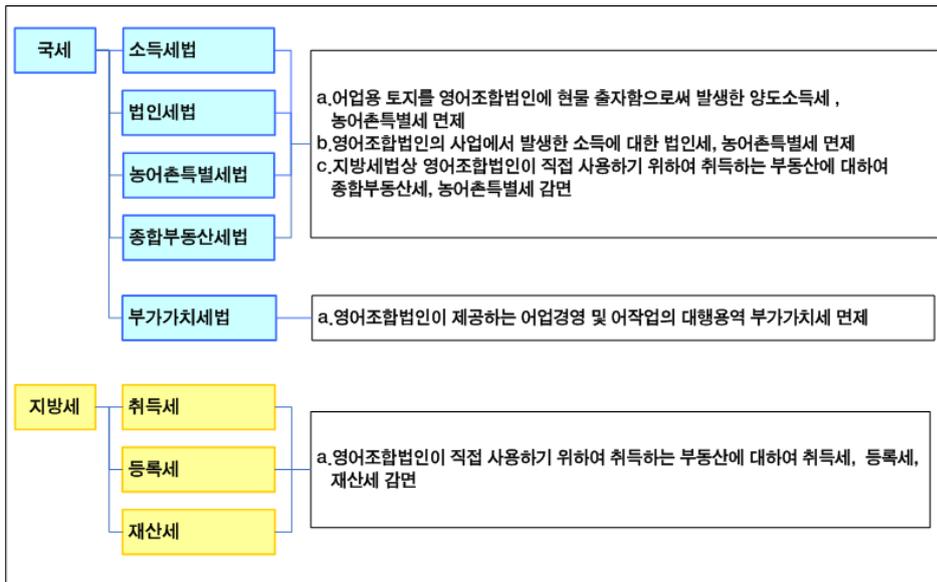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50% 경감한다는 것이다.

4)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감면제도

영어조합법인 부문의 지원세제는 <그림 3-7>과 같이 국세는 소득세법 등 5개 부분이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 3개 부분이다.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감면제도

<그림 3-7>



(1) 국세

①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a) 어업용 토지를 영어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4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현물 출자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⁴⁵⁾이 일몰기간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⁴⁶⁾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45)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물 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말한다(수산업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46)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는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b)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법인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금액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c) 지방세법상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일몰기간은 2014년 6월 30일이다. 감면내용은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감면(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⁴⁷⁾’을 50% 한 것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③ 부가가치세 감면

(a) 영어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서, 이때까지 공급한 용역이 해당된다. 감면내용은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

(2) 지방세

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a)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

47) 영어조합법인 관련 조세감면제도 중 지방세부분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부분 (a) 참조.

내용은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50% 감면(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하고,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4. 수산부문 조세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수산업 부문별 조세감면제도 현황을 기반으로 수산조세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수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수산관련 법체계 분석 결과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취합된 각 분야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 수산업계 종사자로서 어선어업(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 등), 양식어업(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 등), 수산유통·가공업(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중도매인협회, 도매시장법인협회, 통조림가공수협 회원사, 냉동물가공수협 회원사 등), 수협(수협중앙회, 수협조합 등),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설문조사 대상을 수산업계 현업 종사자로 한정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수산 조세 전반에 대한 현업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산 조세지원제도 개선방향 제시이고 선행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향후 본 연구의 내용을 선행 연구로 하여 대학교수, 수산조세 전문가, 타 산업 조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유의성을 향상(설문조사 결과 오류 최소화, 설문 회수율 향상 등)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세관련 현장 전문가를 물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문표본은 전국 수산업계 종사자 중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중도매인협회, 통조림가공수협 및 냉동물가공수협 등에서 추천한 수산조세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수협 회원사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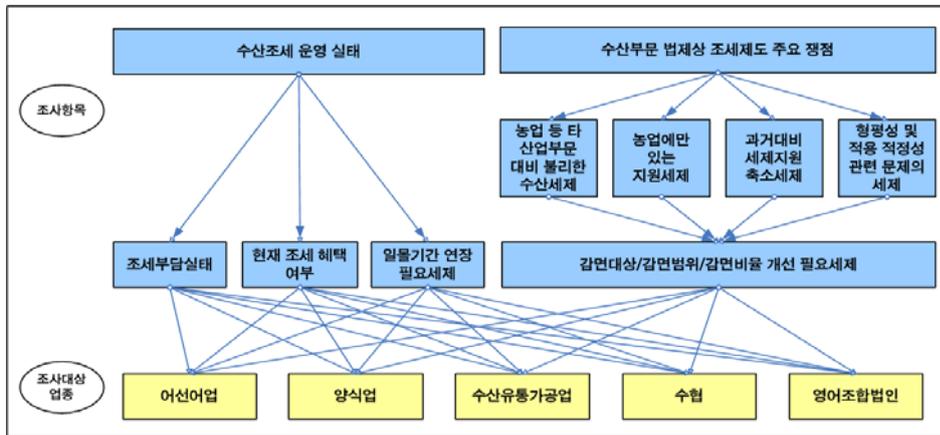
설문 표본 크기는 어선어업 30명, 양식어업 30명, 수산유통가공업 40명, 영어조합법인 10개, 수협 회원사 94개사 등이다. 설문 회수건수는 총 103건(어선어업 21명, 양식어업 20명, 수산유통가공업 18명, 영어조합법인 5명, 수협 39개사)으로 회수율은 50.5%이다. 설문조사기간은 3주 2일(2007년 7월 30일~8월 21일)이다.

설문조사 항목은 수산조세 운영 실태와 수산부문 법제상 조세제도 주요 쟁점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조세 운영 실태 조사항목은 조세부담실태, 현재 조세혜택여부, 일몰기간 연장이 필요한 세제의 존재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조세부담실태조사에서는 현재 주요 납부세목, 조세부담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목 및 항목(일몰기한, 감면대상, 감면비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조세 혜택 여부는 제3장 3절에서 조사된 수산업 부문별·일몰기간별 조세지원 제도에 대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일몰기간 연장 필요세제에서는 현재 법제상 일몰기간별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수산부문 법제상 조세제도 주요 쟁점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농업 등 타 산업대비 불리한 수산세제, 농업에만 있는 지원세제, 과거대비 세제지원 축소세제, 수평성 및 적용 적정성 관련 문제의 세제, 수산부문 내에서 형평성 및 적용 적정성 관련 문제가 있는 4가지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조사했다.

<그림 3-8>

설문조사 분석 틀



1) 수산조세 운영실태 조사

(1) 수산조세 부담실태

① 부담되는 세목

납부하고 있는 수산 조세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목을 묻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어선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수협, 영어조합법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어업, 양식업, 수협은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비중이 높았고, 유통가공업 및 영어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높았다. 어선어업 및 양식업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비중이 높고, 수협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가공업자의 경우 수산물료를 가지고 수산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도 법인형태로 해서 원료를 가지고 자숙 등 저차 가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하는 수산 조세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목

<표 3-23>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부담되는 세목(상위 4개)			
어선어업(N=21)	소득세(42.9%)	부가가치세(33.3%)	법인세(23.8%)	취득세(19.0%)
양식업(N=20)	소득세(45.0%)	취득세(30.0%)	재산세(20.0%)	부가가치세(15.0%)
유통가공업(N=18)	부가가치세(66.7%)	법인세(38.0%)	소득세(27.8%)	재산세(11.1%)
수협(N=39)	법인세(89.7%)	재산세(35.9%)	부가가치세(23.1%)	사업소세(10.3%)
영어조합법인(N=5)	부가가치세(60.0%)	법인세(40.0%)	소득세(20.0%)	취득세(20.0%)

② 개선 필요세목 및 개선항목

납부하고 있는 수산 조세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목을 고르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산부문(어선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수협, 영어조합법인) 종사자들 모두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세목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설문조사 결과, 수산부문 종사자들 대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선택했다. 지원방법을 개선해주기를 희망하는 세제는 어선어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양식업자들은 상속·증여세, 유통가공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협은 법인세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수산업에 있어서 경쟁체제가 서서히 구축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의한 법 적용보다는 성과에 따른 혹은 기준 세분화에 의한 적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4> **납부하는 수산 조세 중 개선이 필요한 세목 및 개선 희망 항목**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개선 필요세목(상위 2개)	개선 희망 항목
어선어업 (N=21)	법인세(28.6)	감면대상(40.0), 감면비율(40.0), 기타(20.0)
	부가가치세(28.6)	감면대상(60.0), 감면비율(20.0), 지원방법(20.0)
	취득세(28.6)	감면비율(66.7), 지원방법(33.3)
양식업 (N=20)	소득세(30.0)	일몰기간(33.3), 감면비율(33.3), 지원방법(33.3)
	상속 및 증여세(20.0)	지원방법(100.0)
	부가가치세(20.0)	감면대상(100.0)
	취득세(20.0)	지원방법(100.0)
유통가공업 (N=18)	부가가치세(60.0)	감면대상(33.3), 감면비율(33.3), 지원방법(33.3)
	법인세(40.0)	감면비율(80.0), 지원방법(20.0)
수협(N=39)	법인세(82.1)	감면비율(44.8), 일몰기간(34.5), 감면대상(17.2), 지원방법(14.3)
	재산세(30.8)	감면대상(50.0), 감면비율(40.0), 일몰기간(10.0)
영어조합법인 (N=5)	부가가치세(60.0)	감면대상(50.0), 기타(50.0)
	법인세(40.0)	감면대상(100.0)

(2) 수산 조세 혜택 여부

① 조세 지원 혜택 비율

조세 지원 혜택 비율을 조사하는 설문에서는 ‘제3장 제3절의 수산업 부문별 조세감면제도 현황’에 나타나 있는 수산업 부문별 법제상 감면제도를 수산업 종사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전체 수산조세 감면제도의 수⁴⁸⁾ 중 혜택 받고 있는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어선어업자(94.4%), 양식업자(97.1%), 수협(95.5%)은 지원세제의 대부분을 인지하여 혜택을 받고 있지만, 유통가공업자(26.3%)들과 영어조합법인(28.6%)은 적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각 수산조세 감면제도의 지원세목별로 평균혜택 비율(조사대상자 중 혜택 받고 있는 수산인 혹은 단체의 수)을 살펴보면 수협이 35.8%, 양식업 23.7%, 어선어업 19.6%, 영어조합법인 14.3%, 유통가공업 2.6%이다.

48) 제3장 제3절의 수산업 부문별 조세감면제도를 일몰기간별로 재정리함(부록의 설문조사표 참조).

지원세제 혜택 여부

<표 3-25>

단위 : 개, %, 중복응답

구 분	혜택 세목 수			각 지원세목별 평균 혜택 비율
	법제상 총 지원세목	설문결과 혜택세목 수	혜택여부의 비율	
어선어업(N=21)	36개	34개	94.4%	19.6%
양식업(N=20)	34개	33개	97.1%	23.7%
유통가공업(N=18)	38개	10개	26.3%	2.6%
수협(N=39)	22개	21개	95.5%	35.8%
영어조합법인(N=5)	7개	2개	28.6%	14.3%

이는 세제를 잘 알고 있는 수산인 혹은 단체만이 수산조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는 수협의 경우에는 수산조세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혜택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영어조합법인 처럼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본업인 어업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산조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가공업의 경우에는 수산에 특화된 세제 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혜택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② 주요 혜택 세목

조사대상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혜택 받고 있는 세제를 살펴보면, 수협이 22개 지원세목 중 8개(36.4%), 양식업자들이 지원세목 34개 중 4개(11.8%), 어선어업자들이 지원세목 36개 중 2개(5.6%), 영어조합법인이 지원세목 7개 중 1개(14.3%), 유통가공업자들은 지원세목 38개 중 0개(0.0%)이다. 즉 설문결과, 세제를 잘 알고 있는 수산업자가 많은 수협, 양식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선어업자 및 양식업자들 절반 정도가 혜택 받고 있는 세제인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육·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감면’과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국세부분 수산조세 감면 현황⁴⁹⁾의

49) 2006년말 기준 국세부분 수산조세 감면현황에 따르면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은 7,092억원(전체 국세 중 85.6%),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433억원(5.2%)으로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음.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양식업자들의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및 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부분도 국세 중 조세감면혜택 순위 3, 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협의 경우에도 2006년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부분 수산조세 감면 현황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수협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2% 저율의 법인세율 적용)’, ‘수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 등에 대한 혜택자가 많다. 이는 수산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세목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수산 세제의 지원 혜택이 몇 가지 세목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3-26>

주요 혜택 세목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응답자의 50% 이상이 혜택 받는 세목	
	세 목 명	비율
어선어업(N=21)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2.4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	52.4
양식업(N=20)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65.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및 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55.0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55.0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	55.0
유통가공업(N=18)	-	-
수협(N=39)	수협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12% 법인세 저율 세율 적용)	94.9
	수협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89.7
	수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위한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	84.6
	수협조합에 대하여 사업소세 경감	84.6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	82.1
	수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위한 취득 부동산의 농특세 감면	76.9
	수협조합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66.7
	수협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3.8
영어조합법인(N=5)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60.0

(3) 일몰기간 연장 필요 세제

일몰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어선어업자들과 양식업자들은 현재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 세제에 대한

2012년말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통가공업은 가공 및 생산자동화를 위한 설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부분의 2009년말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수협은 일몰기간 연장 희망 세제는 현재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된 ‘수협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저율과세)’로서 응답자들은 2009년말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의 일몰기간 연장 희망 세제는 가장 부담이 되고 있고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수협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와 ‘영어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로서 응답자들은 2009년말 일몰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3-27>

일몰기간 연장 요구세제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일몰기간 연장희망세제(상위1개)	희망연장기간	
		5~10년	10년이상
어선어업(N=21)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2012년말 일몰세제)	25.0	75.0
양식업(N=20)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등 감면(2012년말 일몰세제)	22.2	77.8
유통가공업(N=18)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2009년말 일몰세제)	-	100.0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2009년말 일몰세제)	-	100.0
수협(N=39)	수협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2009년말 일몰세제)	8.7	91.3
영어조합법인(N=5)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2009년말 일몰세제)	-	100.0
	영어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2009년말 일몰세제)	-	100.0

2) 현행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수산관련 법체계 분석 결과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취합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 농업 등 타 산업 부문 대비 불리한 수산세제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 종류·대상(조특법§105) 확대 여부
설문조사 결과 어선어업자, 양식업자들 대부분은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종류 및 대상’ 부분에 대해서 농업대비 수산조세가 불리하다고 말했다. 어선어업자와 양식업자들의 절반정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3-28>

부가가치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에 대한 의견

단위 : 개, %

구 분	농업대비 수산조세 비교우위 평가	개선필요항목(상위2개)		
		항 목 명	비율	
어선어업(N=21)	불리 71.4% (N=15)	⇨	지출비용이 높은 어선수리비의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필요	46.7
			부가가치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필요	40.0
양식업(N=20)	불리 85.0% (N=17)	⇨	부가가치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필요	41.2
			적용대상 외에 수산가공·유통업자 추가 필요	23.5
유통가공업(N=18)	불리 66.7% (N=12)	⇨	농업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친환경어업용 기자재 및 설비(태양열 가공시설 등) 개발	75.0
			적용대상 외에 수산가공·유통업자 추가 필요	8.3

어선어업자들은 어선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어선수리비 등 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다. 수산유통·가공업자 대부분은 태양열 가공 설비 등 친환경어업용기자재 및 설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어선어업자들의 6.7%와 양식업자들의 17.6%도 친환경어업용기자재 및 설비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이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어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면세유 공급대상(조특법§106의2) 확대 여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어선어업자, 양식업자, 유통가공업자 대부분은 ‘어업 면세유 공급대상’ 부분에 있어서 농업대비 수산조세가

불리하다고 말했다. 어선어업자, 양식업자, 유통가공업자들 모두는 적용대상 외에 수산물을 자숙, 건조 가공 등을 하고 있는 가공업자와 수산물을 어선 및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는 유통업자들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면세유구입권 교부대상 시설 종류에는 수산물 자숙, 건조 등 가공시설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3-29> **면세유 공급대상에 대한 의견**

단위 : 개, %

구 분	농업대비 수산조세 비교우위 평가	개선필요항목(상위2개)		
		항 목 명	비율	
어선어업(N=21)	불리 85.7% (N=18)	⇨	적용대상 외에 수산가공·유통업자 추가 필요	61.1
			면세유구입권 교부대상 시설 종류 추가 필요	38.9
양식업(N=20)	불리 75.0% (N=15)	⇨	적용대상 외에 수산가공·유통업자 추가 필요	73.3
			면세유구입권 교부대상 시설 종류 추가 필요	20.0
유통가공업(N=18)	필요 72.2% (N=13)	⇨	적용대상 외에 수산가공·유통업자 추가 필요	69.2
			면세유구입권 교부대상 시설 종류 추가 필요	15.4

이러한 설문결과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제1항’에는 농민에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수산업에서는 건조가공업자가 어민의 정의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공업자들은 수산가공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용이 과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 가공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③ 자영업민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지방세법§267) 확대 여부
‘자영업민들이 취득하는 어선·어업권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법§267)’에 대한 지원이 농업부문 지원세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를 평가한 결과 어선어업자 및 양식업자 대부분이 불리하다라고 응답했다.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적용대상(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농업의 자경농업시설에 해당하는 자영업 시설물 추가 필요’라고 응답했다. 어선어업자와 양식업자들은 자영업시설물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될 경우 자숙·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가공업자 및 수산물 저온 저장고를 운영하는 유통업자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어선어업자와 양식업자들은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외에도 수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어선어업자들은 자경농업시설물(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영어업 시설물인 육상수조시설, 자숙·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등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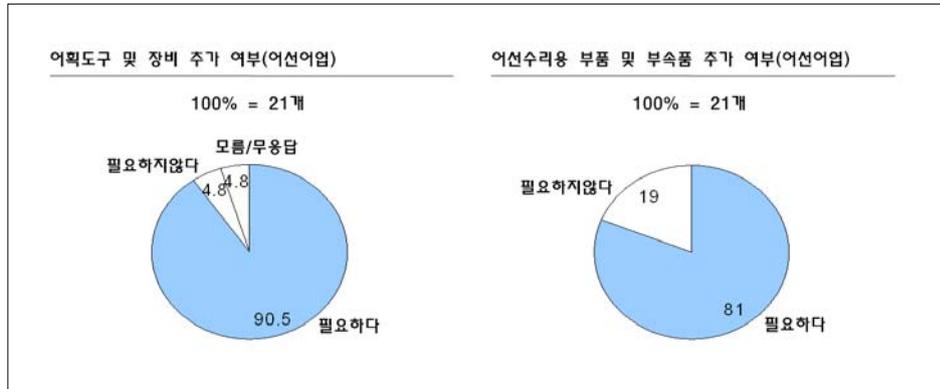
<표 3-30>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의견** 단위 : 개, %

구 분	농업대비 수산조세 비교우위 평가	개선필요항목(상위2개)	
		항 목 명	비율
어선어업 (N=21)	불리 81.0% (N=17)	⇨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47.1
		농업의 자경농업시설물에 해당하는 자영어업시설물 추가 필요	41.2
양식업 (N=20)	불리 70.0% (N=14)	⇨ 농업의 자경농업시설물에 해당하는 자영어업시설물 추가 필요	57.1
		적용대상을 확대(수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확대 등)하는 것이 필요	35.7

④ 비관세 대상 선용품 범위(관세법§2)에 어획도구 등 포함 여부

현재 상선 위주로 정의되어 있는 비관세 대상 선용품 범위에 그물, 조상기 등의

<그림 3-9> **비관세 대상 선용품 범위에 어선관련 장비의 추가에 대한 의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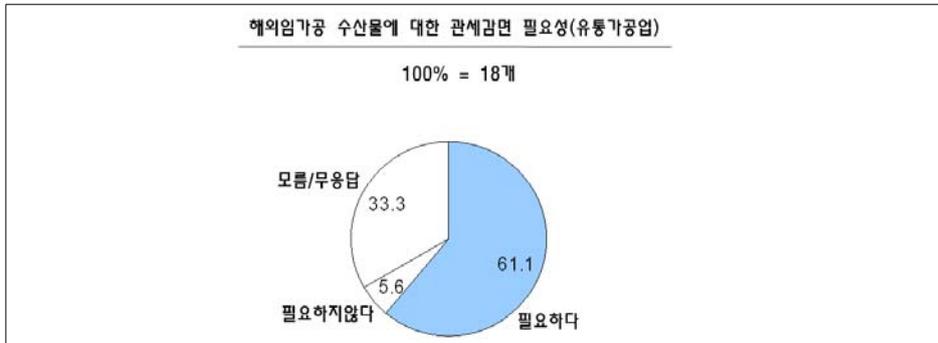
어획도구 및 장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어선어업자의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비관세 대상 선용품 범위에 어선수리용 부품 및 부속품의 추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도 어선어업자들의 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수산업이 해운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법 입안 시 수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입관세 측면의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법 개정 시 어선의 필수장비와 어선수리용 부품 및 부속품이 비관세 대상 선용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관세감면 해외임가공 품목(관세법§101)에 수산물 포함 여부

유통가공업자들에게 관세감면 해외임가공 품목에 수산물 포함 여부의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3-10> **해외임가공 수산물에 대한 비관세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이는 수산가공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 임가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산업보다 경쟁력이 있는 전기기기 제품 및 사진기 등 최첨단 제품의 해외 임가공에 대한 관세법상의 지원과 달리 수산업 분야에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수산물 해외 임가공품에 대한 비관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관세법 제101조의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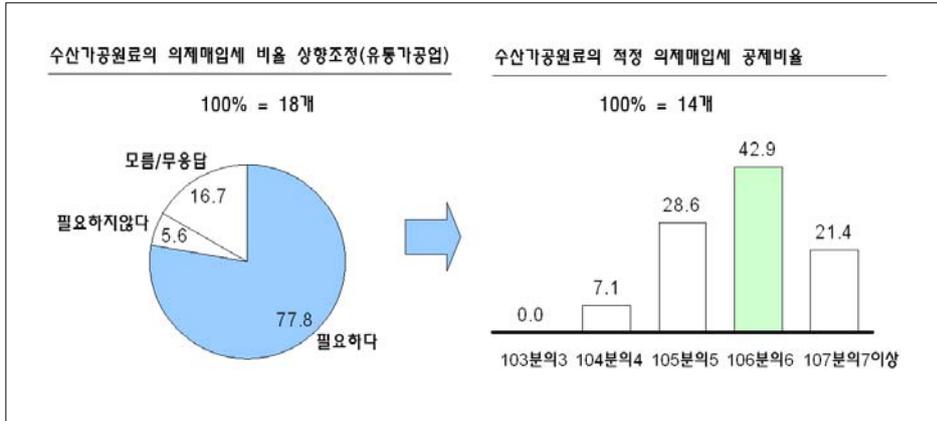
⑥ 수산가공원료의 의제매입세 공제율(부가가치세법§17) 확대 여부

설문조사 결과, 수산가공원료의 의제매입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통가공업자들은 전체의 77.8%이다. 그리고 유통가공업자의 절반

정도가 희망하는 수산가공원료의 의제매입세 공제비율은 106분의 6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수산가공원료의 적정 의제매입세 공제비율에 대한 의견

단위 : %



현재 참치통조림 제조, 건어물 가공 등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수산물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가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건비는 중국, 인도, 태국 등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원가절감만으로는 해외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공업자들은 원가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산가공원료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비율을 높여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2) 농업에만 있는 지원세제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69)에 상응하는 세제 추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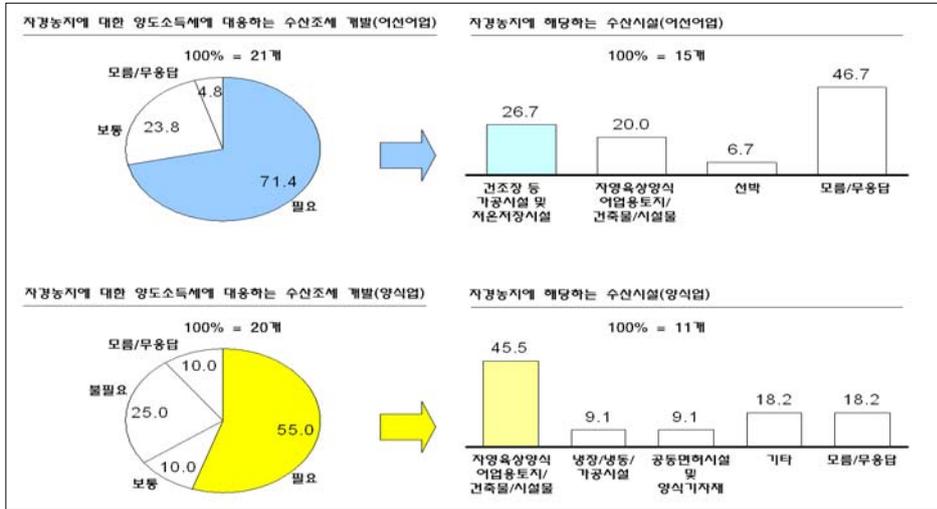
농업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부분을 수산 부문에 추가(자영육상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 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어선어업자들의 대부분과 양식업자들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선어업자 및 양식업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야 하는 자영육상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로 어선어업 부대시설, 건조가공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육상 수조 양식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치어 등 종묘생산시설, 저온저장시설 및 냉동보관 창고 등을 추천했다. 즉, 어선어업자들과 양식업자들은 농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농업부문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육상수조양식시설, 치어 등 종묘

생산시설, 건조가공시설, 창고시설 등 자영육상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림 3-1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는 수산조세 추가 여부의 의견

단위 : %



②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의 면제(조특법§71)에 상응하는 세제 추가 여부

현재 농업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는 ‘영농 자녀가 2011년말까지 증여받은 농지·초지·산림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항목에 상응하는 수산조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 어선어업자들과 양식업자들 대부분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어선 및 어업권의 기준은 어선업자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어선은 20톤 미만, 어업권은 10ha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양식업자들은 어선의 경우 20톤미만 및

<표 3-31>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에 해당하는 수산조세 추가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수산조세 추가 필요성 평가		어선 및 어업권 감면기준		
			항 목 (상위 1개)		비율
어선어업(N=21)	필요 90.5%(N=19)	⇨	어 선	20톤미만	52.6
			어업권	10ha미만	42.1
양식업(N=20)	필요 70.0%(N=14)	⇨	어 선	20톤미만, 20~30톤미만	28.6
			어업권	10~20ha미만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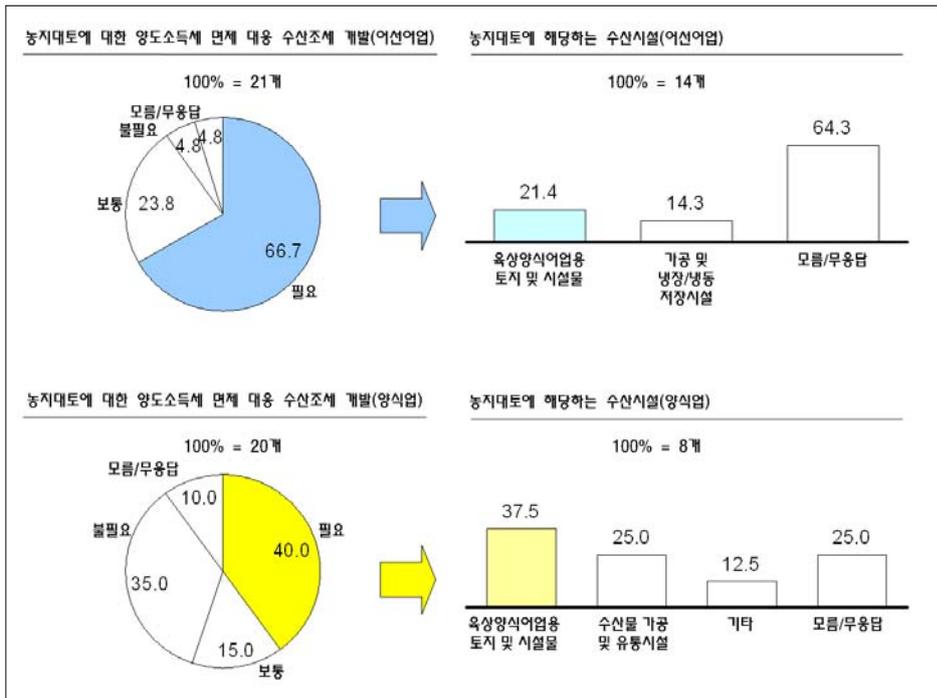
20~30톤미만, 어업권은 10~20ha를 원했다. 이처럼 어선업자에 비해 양식업자의 어업권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어선업자와 달리 양식업자들은 현재 양식을 하고 있어 자신의 어장 규모를 감안하여 응답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③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70)에 상응하는 세제 추가 여부

현재 농업부분에만 존재하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응하는 수산조세 개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어선어업자의 66.7%, 양식업자의 40.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어선어업자들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수산시설로 육상양식어업용 토지·건축물의 변경 및 증설에 따른 대토 21.4%, 수산가공에 활용되는 토지·시설물 및 저장·가공시설의 대토 14.3%의 순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양식어업자들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수산시설로 시설 선진화 및 어종변경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용 토지·건축물의 대토 37.5%,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토지 대토 25.0%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3-1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응 수산조세 추가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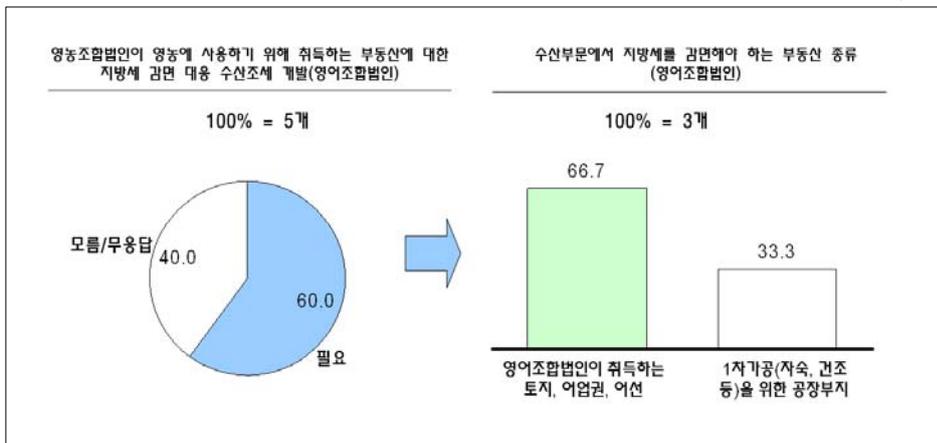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어선어업자 및 양식업자들도 농업부분과 마찬가지로 어촌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육상양식어업용 토지·건축물 및 저장·가공시설에 대하여 시설 선진화 및 용도변경 등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266)에 상응하는 세제 추가 여부

현재 농업부분에만 존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수산조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영농조합법인의 60.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농조합법인의 66.7%가 수산부분에서 지방세를 감면해야 하는 부동산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어선·어업권을 선택했고, 33.3%가 자숙·건조 등의 1차 가공을 위한 공장부지를 선정했다.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산부분의 영농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어선·어업권 및 자숙·건조 등 1차 가공을 위한 공장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3-14> 영농조합법인의 영농목적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의 조화 단위 : %



(3) 과거대비 세제지원 축소세제

① 관세 면제 품목의 범위(관세법§93)에 수산물 제외

관세법상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에서 2007년 5월 29일 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개정으로 기존에 포함되었던 수산물이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서 어선어업자들의 76.2%, 양식업자들의 50.0%가 비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수산물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비관세 대상 수산물로 어선어업자와 양식업자 모두 양식용 돔 및 농어, 양식용 실뱀장어는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선어업자와 양식업자들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세법 제93조 제1호(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양식용 돔 및 농어(수정란 포함), 양식용 실뱀장어, 피조개의 종묘, 송어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표 3-32> 동식물 번식/양식 등을 위한 수산물 비관세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 중복응답

구 분	번식/양식 등을 위한 수산물 비관세 필요성		관세 면제 대상 희망 품목	
			품 목 명(상위3개)	비 율
어선어업(N=21)	필요 76.2%(N=16)	⇒	양식용 돔 및 농어	37.5
			양식용 실뱀장어	31.3
			피조개의 종묘	25.0
양식업(N=20)	필요 50.0%(N=10)	⇒	양식용 실뱀장어	50.0
			피조개의 종묘	30.0
			양식용 돔 및 농어	20.0
			송어란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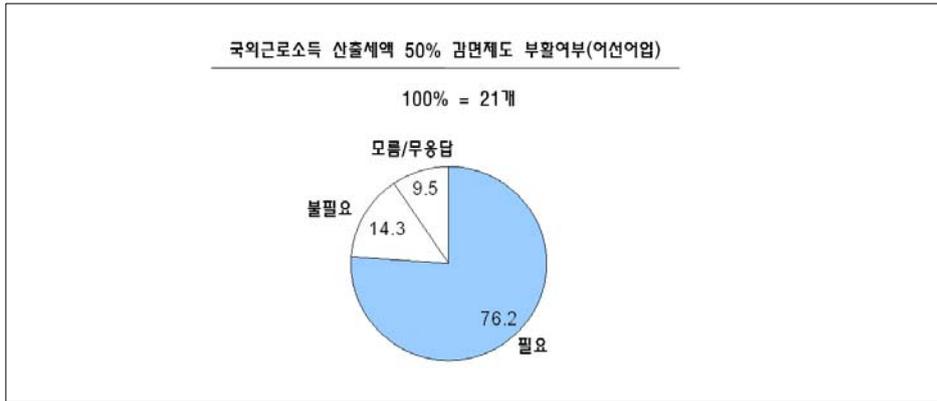
②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 50% 감면 제도 부활 여부

1994년 12월 22일 폐지된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 50% 감면 제도(소득세법 법률 제3472~4744호 §72)’의 부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어선어업자들의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이 감면혜택이 폐지됨으로써 핵심기술을 가진 선장 및 기관장들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여 임금을 높게 주는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선어업자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개정을 통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림 3-15>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 50% 감면제도 부활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



(4) 수산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및 적용 적정성 관련 세제

① 면세유 공급대상자(조특법§106의조)에 수산가공업자 포함 여부

면세유 공급대상자 확대를 희망했던 수산업자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67.4%가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수산유통 및 가공업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양식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수산유통 및 가공업자에게 면세유 공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양식업자들 대부분이 양식업과 자숙·건조 등 가공업을 병행하고 있어 수산가공업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수의 수산업자들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의 면세유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어업주업법인 외에 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수산유통·가공업자를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3-33>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수산유통 및 가공업자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개, %

구 분	총 응답수	수산 유통·가공업자 포함 희망 수	비 율
어선어업	18	11	61.1
양식업	15	11	73.3
유통가공업	13	9	69.2
전체	46	31	67.4

②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대상(조특법§105)에 어선수리용역 포함여부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를 희망했던 수산업자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어선어업자들 중 절반 정도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어선의 수리비 등 수리용역이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업자들 특히 어선어업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개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어선에 대한 수리 용역에 대해서도 영의세율을 적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3-34>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대상에 어선수리용역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개, %

구 분	총응답수	어선수리용역 포함 희망수	비 율
어선어업	15	7	46.7

③ 면허세 이중과세 문제(지방세법§161)의 적정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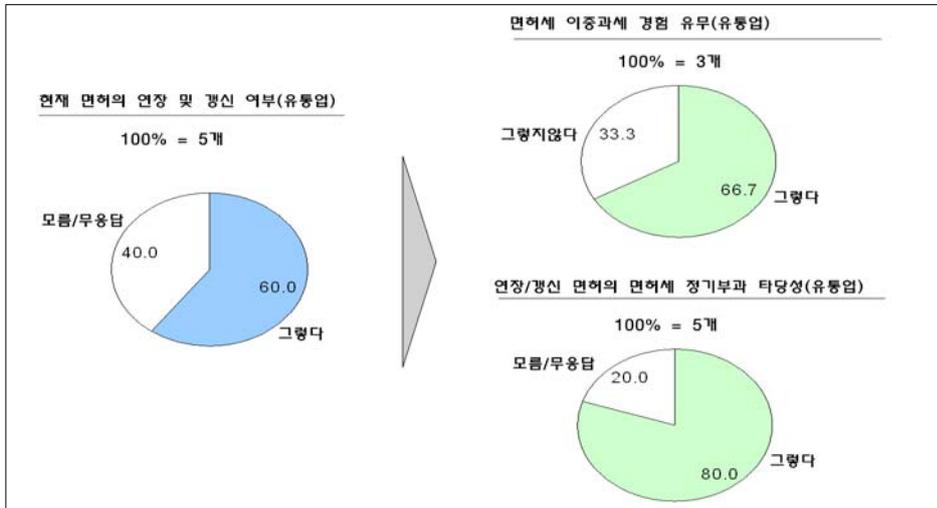
면허세 이중과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면허를 연장·갱신하고 있는 유통업자들 중 66.7%가 이중과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유통업자들은 지방세법 제161조의 내용을 명확화해서 면허가 연장·갱신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인정하여 면허세를 매년 1월 1일 정기부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장·갱신 면허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의견

<그림 3-16>

단위 : %



④ 지방의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소득세법시행령§147)의 적정성 여부

지방 중도매인에 대한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통업자의 80%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즉 유통업자 대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및 부칙 제15969호 제19조에 언급된 중도매인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인 2007년 25%, 2008년 30%, 2009년 35%, 2010년 40%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의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그림 3-17>

단위 : %



제 4 장 수산부문 조세 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되는 조세제도는 농지 등의 취득, 보유, 경작 및 이전과 관련되는 조세,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관련되는 조세, 농업법인의 경영과 관련되는 조세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농업 부문 조세지원제도(감면제도)는 농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WTO 및 FTA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산물의 대폭적인 수입 증가에 의해 농업의 경쟁력 약화 및 농가소득의 악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은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조세지원(조세감면) 문제가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부문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에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할 것이다.

1) 농업부문 조세지원

(1) 농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소득법§12)하는 것으로 일몰시한이 없다.

(2)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전통주)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 외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소득법§12)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①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농민주), ②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함)가 추천하는 주류, ③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분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④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91.6.30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함), ⑤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99.2.5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함)를 의미한다.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감면범위는 사업소득이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200만원 초과시에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일몰시한은 없다.

(3)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⁵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분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법§89, 소득영§153①)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이다.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소득영§153⑤⑥), ④ 「농어촌정비법」·「농지법」·「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를 의미한다.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즉, 그 차액이 큰 편 1/4을 초과하면 교환·분합으로 양도된 토지 전부가 비과세대상에서 배제되며, 일몰시한은 없다.

이 조항에서의 농지의 범위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소득규칙§70①)하며, 농지 소재지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소득영§153③). 즉,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또한 실제 농지라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소득영§153④)하는

50) 여기서 교환이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분합이란 자기의 농지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농지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도 있다. 그 예로서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91) 및 기타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조특법§129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면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4)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조특법§70)하는 제도로서 감면시한은 없다.

감면요건은 첫째, 거주자의 요건으로 3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조특영§67①)이다. 여기서 어느 하나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 위 「㉠」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둘째, 직접 경작해야 한다. 즉,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해야 하는 것(조특영§67②)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특영§67③)이다. 즉,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부터 1년(관계법령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신규 취득 농지면적이 양도 농지면적의 1/2 이상일 것과 신규 취득 농지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3 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신규 취득 농지면적이 양도 농지면적의 1/2 이상일 것과 신규 취득 농지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3 이상일 것(조특영§67④·§67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조특법§69)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농특세가 면제된다.

감면요건은 양도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조특영§66㉔)이어야 한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그런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일몰시한은 없으며,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 지구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조특법§102, 농특법§4)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몰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7) 영농을 위한 농가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취득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고급주택은 제외(농특법§4·11호, 농특영§4⑤)하며, 일몰시한의 규정은 없다.

(8)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을 살펴보면, 첫째, 간척농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둘째, 교환·분합농지 -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셋째,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넷째,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위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임야, 다섯째, 보전산지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취득하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99만 m² 이내의 것에 한함), 여섯째, 간척조성농지 -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감면범위는 첫째, 간척농지와 교환 또는 분합농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보전산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농특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셋째, 간척조성농지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특세를 비과세(지방법§263·농특법§4)하고 있으며, 일몰시한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농지·초지·산림지(농지 등)를 재촌 자경농민이 재촌 자경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조특법§71)하며, 일몰시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감면요건은 (가) 농지 등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는데, 그 대상으로 농지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29,700m² 이내, 초지는 148,500m² 이내, 산림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로서 297,000㎡ 이내, 조림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990,000㎡ 이내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할 것,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밖에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지구(조특법시행령 [별표6의2])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조특법§71①)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8①), 즉, 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결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②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⁵¹⁾

(다) 영농자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68③), 즉, ①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계농업경영인 및 임업후계자로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또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결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①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또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결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영농조합법인 등 부문 조세지원

(1) 농협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농협조합·중앙회·조합공동사업법인에 우선 출자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농특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88의4·농특법§4)하며, 일몰시한은 없다.

감면요건은 첫째,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둘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셋째,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08.12.31까지는 3,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1)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68②).

(2)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업기반공사가 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②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③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④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감면범위는 상기 ①~③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④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지방법§266②·중부법§6)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몰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일본의 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일본의 농림수산부문 조세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농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임업 및 목재가공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다.

2007년 일본 정부가 추진한 농림수산관계 세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산시책과 관련해서는 ① 어업협동조합등의 유보소득의 특별공제제도 연장(소득세·법인세) ② 어업협동조합등의 대출담보금 특례조치 연장(소득세·법인세), 둘째, 농업경영·구조, 농산촌지역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① 경영소득안정대책등(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미정책개혁추진대책, 농지·수·환경보전향상대책)의 교부금에 대한 특례조치(준비금및압축기장제도)의 창설(소득세·법인세) ② 2006년도 수전농업구조개혁교부금(산지활성화대책)등에 대한 특례조치 창설(소득세·법인세) ③ 산촌진흥법에 의거한 인정법인이 실시하는 보전사업 등용으로 제공하는 기계·건물 등과 관련한 특별상각제도의 연장(법인세), 셋째, 바이로매스 활용,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① 식품리사이클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상품화설비등(식품순환자원재생리용설비)의 특별상각제도 확충(소득세·법인세) ② 식품기업, 농림어업자

등의 감가상각제도에 대한 상각가능한도액을 폐지하는 등 필요조치(소득세·법인세) ③ 특정농산가공업자가 사업기반강화설비를 취득한 경우의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제도 연장(소득세·법인세), 넷째, 삼림·임업진흥대책과 관련해서는 ① 삼림조합의 합병과 관련한 기업재편세제의 특례조치 확충(법인세) ② 식림비의 손금산입 특례조치의 연장(법인세) ③ 산림소득과 관련한 삼림계화특별공제제도의 연장(소득세) 등이다.

어업자에 지원되는 주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구 분	내 용
청색신고의 특례조치	○ 청색신고의 특례(소득세·법인세)
어선양도 관련 특례조치	○ 신어선 구매교환의 경우 과세특례(소득세·법인세)
어업자에 대한 특례조치	○ 어업에 대한 사업세의 비과세(사업세)
어업용기계장치등의 설비 투자등 관련 특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용기계장치의 취득·보유 등 관련 특례 - 160만엔 이상의 어업기계를 취득한 경우 등의 특례(중소기업등 투자촉진세제)(소득세·법인세) -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등 압축액의 손금산입 특례(소득세·법인세) - 소액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특례(소득세·법인세) - 어선에 대한 특례(고정자산세) - 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특례(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사업소세) - 어업에 사용하는 경유거래세 면세(경유거래세) - 어업용 A중유의 석유석탄세 면세 및 환급(석유석탄세)
기타 어업경영의 안정·발전을 지원하는 세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특별수선준비금제도(소득세·법인세) - 전·폐업조성금등의 과세특례(소득세·법인세) -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등의 전대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세율경감(등록면허세) - 어업신용기금협회의 저당권설정등기등 세율경감(등록면허세) - 어업협동조합이 분배하는 종사자 분량배당등 특례(법인세)

1) 청색신고⁵²⁾의 과세특례 조치(소득세·법인세)

① 개인어업자

확정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의해 이듬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다. 청색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청색신고를 하려고 하는 해의 3월 15일까지 납세지를 소관하는 세무서에 「청색신고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색신고를 하려고 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일정한 방법으로 기장한 장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정한 방법의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규의 부기에 의한 기장이 원칙이지만 현금출납장, 외상매출장, 외상매입장을 준비하여 간단히 기장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② 법인어업자

확정신고는 사업연도마다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해 그 사업연도가 종료한 다음날부터 2개월내 한다. 청색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청색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업연도 전일까지 납세지를 소관하는 세무서에 「청색신고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색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업연도 다음날까지의 거래에 대해 일정한 방법으로 기장한 장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정한 방법의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규의 부기에 의한 기장이 원칙이다.

③ 청색신고의 특례 내용

청색신고자의 주요 특례내용은 <표 4-2>와 같다.

2) 어선의 대체·교환의 경우 특례조치(소득세·법인세)

특례 대상자는 어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특례 내용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매각하고 새로운 어선을 구입하는 경우, ① 개인의 경우는 매각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② 법인의 경우는 매각차익 금액에 따라 새로 구입한 어선의 자산 가치를 감액 처리(압축 기장)하여 과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적용기한은 소득세 2011년 12월 31일까지며, 법인세 2011년 3월 31일까지로 규

52)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에 따라 소득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세하는 신고납세제도를 말함. 청색신고는 정규의 부기에 의한 기장을 원칙으로 함.

청색신고자의 특례 내용

<표 4-2>

특례 내용		청색 신고
소득 계산 상의 특전	사업중사자급여를 필요 경비로 산입	원칙으로서 전액 필요 경비로 산입
	신고 공제	최고 65만엔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각종 충당금의 이월	대손충당금 이월이 가능
	각종 준비금의 적립	농어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등의 적립이 가능
	감가상각의 특례 등	특정설비 등의 특별상각세액공제조치
	재고자산의 저가법 선택	저가법 선택이 가능
순손실의 이월결손금 제도		3년간 이월결손 공제가 가능(법인은 7년간)
순손실의 환급제도		금년 손실을 전년으로 되돌려서 전년도 소득세를 환급 가능

정하고 있다.

3) 어업에 대한 사업세의 비과세(사업세)

특례 대상자는 어업자 중 주로 자가 노동력으로 소규모 수산동식물을 채포(대형 정치 및 양식업을 제외)하는 경우이며, 여기서 자가 노동력에 의존하는 사업이란 사업주 또는 동거 친족의 노동일수 합계가 타인 노동일수 합계의 1/2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규모 수산동식물 채포사업이란 무동력 또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채포하거나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사업(다시마, 전복 등의 채취, 소형정치, 지인망 등)을 의미한다.

특례 내용은 원칙적으로 어업자의 사업세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4) 어업용 설비투자과 관련된 특례조치

(1) 중소기업 등 투자촉진세제(소득세·법인세)

① 특례 대상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어업협동조합 등을 포함)이 특정 기계와 설비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특례 내용 및 적용기한

일반적인 감가상각에 30%의 특별상각을 추가하거나, 매입가격의 7%를 세금(소득세, 법인세) 공제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08년 3월 31일 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③ 대상 기계 설비

- ㉠ 기계 및 장치 : 매입가격이 160만엔 이상 그리고 리스비용의 총액이 210만엔 이상인 것
- ㉡ 기구 및 비품 : 전자계산기, 디지털 복사기 등 매입가격이 100만엔 이상 그리고 리스비용의 총액이 160만엔 이상인 것
- ㉢ 소프트웨어 : 매입가격이 70만엔 이상 그리고 리스비용의 총액이 100만엔 이상인 것
- ㉣ 화물자동차로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것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의 압축기장 특례(소득세·법인세)

① 특례 내용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한 보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에, 그 보조금의 목적에 적합한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이 이루어졌을 때, 원칙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상응한 금액 범위 내에서 압축기장이 인정된다.

② 특례 효과

압축기장으로 인해 보조금 부분이 상쇄되어 초년도 자산취득 부담이 경감된다. 단, 압축기장은 과세가 연장되는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3) 소액 감가상각자산 취득원가의 손금산입 특례(소득세·법인세)

① 특례 대상자는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어업자이다.

② 특례 내용

어업자가 취득원가 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 전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단 특례의 대상인 필요경비 산입액의 상한은 연간 300만엔까지다.

소액 감가상각자산 취득원가의 손금산입 특례내용

<표 4-3>

취득원가	상각 방법		
	법정상각 (정액법·정율법)	3년간 일괄 상각 (1/3상각)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 (즉시 상각)
30만엔 이상	○	×	×
20만엔 이상 30만엔 미만	○	×	○ (청색신고가 필요) (합계 300만엔까지)
10만엔 이상 20만엔 미만	○	○	○ (청색신고가 필요) (합계 300만엔까지)
10만엔 미만	- (법인은 ○)	× (법인은 ○)	○

(4) 어선의 고정자산세에 대한 특례조치

어선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로서 대상과 과세표준은 <표 4-4>와 같다.

어선의 고정자산세에 대한 특례조치

<표 4-4>

구 분	대 상	과세 표준
외항선박	- 총 톤수 500톤 이상의 어선 - 농림수산대신이 허가·승인한 어업에 종사 총 톤수 9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	어선가격의 1/6
	- 외항선박 중 외국무역을 위해 취항하는 선박	어선가격의 1/10
준 외항선박	- 농림수산대신이 허가·승인한 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45톤 이상 90톤 미만의 어선	어선가격의 1/4
내항선박	- 상기외의 어선(낚시안내선 등은 제외)	어선가격의 1/2

(5) 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 특례조치

① 특례 대상

어업협동조합 등이 ㉠ 국가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의 교부, ㉡ 어업근대화자금⁵³⁾, ㉢ 연안어업개선자금⁵⁴⁾(경영등 개선자금) (※고정자산세 만), ㉣ 농림어업금융공고⁵⁵⁾ 자금, ㉤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⁵⁶⁾ 자금을 받아 취득한 공동이용시설

이 대상으로 된다(※대상이 되는 공동이용시설은 각 자금, 교부금별로 설정되어 있다).

② 특례 대상자

어업협동조합, 어업생산조합(부동산취득세, 사업소득세),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 수산가공협동조합연합회이다.

③ 특례내용

- ㉠ 부동산 취득세 : 어업협동조합이 취득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출 또는 교부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입가격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고정자산세 : 어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한 공동이용 기계 및 장치에 관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은 매입가격의 2분의 1이다.
 - 새로이 고정자산세가 부과되었던 연도부터 3년도 분에 한한다.
 - 용자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한 대 또는 한 기의 취득가격이 330만엔 이상의 것에 한한다.
 - 교부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500만엔 이상의 교부금을 받아 한 대 또는 한 기의 취득가격이 330만엔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사업소득세 : 어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한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업소득세는 비과세로 된다.

-
- 53)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에 의해 1979년 창설되어 어업자들의 자금장비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어업경영의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어선, 어구, 기타 개인 및 공동이용시설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이 용자되고 있다.
 - 54) 1979년에 창설되어 연안어업종사자 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연안어업의 경영, 조업상태, 어가 생활의 개선, 어업후계자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도도부현(都道府縣)이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다.
 - 55) 농림어업금융공고법(1952년 법률 제355호)을 기본으로 하여 1953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당 공고는 농림어업의 생산력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장기 저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하나이다. 농림공고에 의해 용자된 자금은 농림어업의 경영 구조 개선이나 생산기반의 정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극히 정책성이 높은 것이다. 자금 종류는 정책 목적에 따라 현재 27종류가 만들어져 있다.
 - 56) 오키나와 경제부흥 및 사회개발을 위해 1972년에 설립된 정부은행.

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식

<표 4-5>

세 목	과세 표준의 계산식
부동산 취득세	(1) 용자 또는 교부금의 경우 가격 - 가격 × (대부 또는 교부 금액/취득 가액)
	(2) 용자 > 교부금의 경우 가격 - {가격 × (대부금/취득가액) + 가격 × (교부금액/취득가액) × 2/5}
	(3) 교부금 > 용자의 경우 가격 - {가격 × (교부금액/취득가액) + 가격 × (대부금/취득가액) × 2/5}
고정자산세	가격 × 1/2
사업소세	비 과 세

(6) 어업에 사용한 경유인수세의 면세(경유인수세)

① 특례 대상자

선박(어선)의 동력원에 공급하는 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자가 대상자로 된다.

② 특례 내용

경유인수세는 도로의 정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지방세)이다. 선박(어선)에서의 사용 등 도로의 정비와 직접 관계없는 용도에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지역 사무소에 신고하여 면세경유사용자증과 면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경유인수세가 면세된다.

③ 특례 효과

경유인수세는 1kl에 32,100엔(1ℓ 당 32.1엔)이다.

(구체적 예) 어업용 경유를 10kl 구입하였을 경우

$$32,100\text{엔} \times 10\text{kl} = 321,100\text{엔의 효과}$$

(7) 어업용 A중유의 석유석탄세의 면세 및 환급(석탄석유세)

① 특례 내용

어업자가 어업에 사용하는 A중유는 석유석탄세(2,040엔/kl)가 면세된다. 어업용 수입 A중유와 국산 A중유는 다음과 같이 석탄석유세가 면세되는 단계가 다르다.

㉔ 어업용 수입 A중유의 경우 : 수입업자(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 우리나라 수협중앙회에 해당)가 석유석탄세를 면세하여 이를 어업자의 판매가격에 반영한다.

- ⑥ 어업용 국산 A중유의 경우 : 석유석탄세가 과세된 후의 원유를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산 A중유로 어업용에 사용한 경우에는 석유석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조자에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된 금액을 어업자의 판매가격에 반영한다.

② 특례 효과

어업자가 어업용 A중유를 100kl 구입한 경우, $2,040\text{엔} \times 100\text{kl} = 204,000\text{엔}$ 으로 204,000엔의 효과가 발생한다.

5) 기타 수산관련 세제지원 조치

(1) 특별수선준비금제도(소득세·법인세)

① 특례 대상

청색신고서를 작성한 개인 또는 법인이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비용이 대상으로 된다.

② 특례 내용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이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수선 비용을 특별수선준비금으로서 적립한 금액은 필요경비(법인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text{적립 한계도} = \text{특별 수선에 필요한 비용} \times \frac{3}{4} \times \frac{12\text{개월}}{60\text{개월}}$$

(2) 전폐업조성금 등의 과세 특례(소득세·법인세)

① 특례 대상자

국가가 인정·승인한 계획에 따라 감척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으로 된다.

② 특례 내용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또는 잔존 사업자 등이 각출한 보상금(전폐업조성금 등)을 받고 재정대신(우리나라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금지정(고시)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인정된다.

○ 전폐업조성금 전업 또는 폐업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인) 총수입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 압축 기장
----------------------------------	---

주 :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일시소득 및 수입이 된다.

③ 특례 효과

폐업자가 받는 전폐업조성금에 대한 과세특례로 인해 폐업과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3) 농림어업금융공고자금 등을 전대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세율 감면 (등록면허세)

① 특례 대상

농어협 등이 농림어업금융공고 및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 목적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농림어업자에게 대출한 경우(전대) 저당권설정등기가 대상으로 된다.

② 특례 대상자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삼림조합, 삼림조합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이다.

③ 특례 내용

농어협 등이 농림어업금융공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농림어업자에게 전대한 경우, 그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본칙 4/1,000를 2/1,000로 감면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8년 9월 30일까지의 특례조치이다. ② 대출한 날부터 1년 내에 등기를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신청 시에 농림어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

(4) 어업신용기금협회의 저당권설정등기 세율경감(등록면허세)

① 특례 대상자

어업신용기금협회(이하 「기금협회」라고 함)의 보증을 받기 위해 부동산 담보와

관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어업자 등

② 특례 내용

일반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액(과세표준)에 대하여 1,000분의 4(세율)의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만 어업자 등이 기금협회의 보증을 받기 위해 기금협회를 저당권자로서 설정한 등기에 대해서는 세율이 1,000분의 1로 된다.

③ 특례 효과

본 특례 조치는 기금협회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아서 경영 개선 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어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어업자가 원활히 경영 개선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5) 어업협동조합이 분배하는 사업분량배당의 특례(법인세)

① 특례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어업협동조합 등(어업협동조합, 일부 어업생산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 대상이다.

② 특례 내용

어업협동조합 등이 지출하는 이하의 사업분량배당 등은 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액에 산입한다.

- ① 이용분량배당금 : 어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 및 구성원에 대해 사업연도 중에 취급한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이용한 분량에 따라 배분한 배당금
- ② 종사분량배당금 : 협동조합 등이 조합원 및 구성원에 대해 사업연도 중에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한 배당금(※사업분량배당 이외의 배당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6) 식품관련 사업자 및 특정지역 어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이상에서 소개한 수산업에 직접 관련되는 일본의 세제지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사업자 및 특정지역 어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표 4-6> 및 <표 4-7>과 같다.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표 4-6>

구 분	내 용
도매시장의 자산 매입전환이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용자산의 매입전환·교환의 경우, 과세특례(소득세·법인세) - 도매시장법에 의한 합병등 관련 등기·회사분할 동반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의 등기 세율경감(등록면허세) - 지방도매시장의 건물 및 상각자산(償却資産) 관련 과세표준특례(중핵 시장세제) (고정자산세)
사업용설비 또는 기계장치 등의 취득 등 관련 특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등 투자촉진세제(소득세·법인세) - 중소기업등 기반강화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소득세·법인세) •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에 의한 특례(소득세·법인세) •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에 의거한 특례(소득세·법인세) - 공해방지용설비등 관련 특례(소득세·법인세·고정자산세) - 에너지혁신세 : 유무가열(통전가열)장치(소득세·법인세) - 리사이클설비 관련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리사이클설비 관련 특례(소득세·법인세·고정자산세) • 리사이클병 세정설비등 관련 특례(고정자산세)
연구개발 지원 특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의 경우 특별공제(연구개발촉진세제)(소득세·법인세) - 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취득한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의 압축액 손금산입(법인세) -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개발용 자산 관련 과세표준특례(고정자산세)
어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협동조합 등의 회수불능준비금(貸倒引当金) 특례(법인세) - 어업협동조합 등의 유보소득 특별공제(법인세)
식품기업 등 경영 안정·발전 등 지원 세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용건물등 할증상각(소득세·법인세) - 유통기능 고도화 기여 창고 등 과세표준 특례(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HACCP기법지원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시설정비 관련 부동산 취득세 특례(부동산취득세) - 지정 인정기관이 구성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모아 구입한 시험연구용 고정자산 압축액의 손금산입(법인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의거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혁신설비 도입의 경우 특례(소득세·법인세) • 회사설립·자본 증가 등에 있어서 등록면허세 경감조치(등록면허세) • 영업양도 관련 부동산 취득세 특례(부동산취득세) - 동족(同族)회사 유보금과세 부적용(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에 의한 것) (법인세) - 특정농산가공업경영개선임시특별조치법에 의해 정비된 사업소 관련 과세표준 특례(사업소세) - 된장, 간장, 식용초 제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관련 과세표준 특례 (사업소세)

자료 : 農林水産省 홈페이지, 農林水産關係稅制(日本, 2007).

<표 4-7>

특정지역 어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구 분	내 용
특정지역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특례조치	<p>○ 특정지역 농림수산업자등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진흥법에 의거, 인정법인이 실시하는 보전사업등용으로 제공하는 기계·건물등 관련 특별상각(법인세) - 이도(離島)진흥대책 실시지역·반도진흥대책 실시지역·아마미군도(奄美群島)·과소지역 등에 있어서 공업용 기계등 관련 특별상각(소득세·법인세) - 농촌지역공업등도입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공업등 도입지구에 있어서 공업용기계등의 특별상각(소득세·법인세) -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 경영기반 강화계획을 실시하는 자의 기계등 할증상각(소득세·법인세) - 오키나와 특정중소기업자가 경영혁신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 등의 특별상각 또는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자료 : 農林水産省 홈페이지, 農林水産關係稅制(日本, 2007).

제 5 장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조세란 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세 중에서 수산업 부문에 관련되는 조세를 의미하며,⁵⁷⁾ 특히, WTO 체제하에서 조세지원제도는 예상되는 어업인의 상대적, 절대적 소득감소를 최소화 내지 보전하고,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상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환급, 특례세율 및 영세율제도 등의 유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경영의식을 고취하여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세 징수의 포기 또는 경감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징수의 포기 또는 경감행위는 WTO SCM 협정에서 보조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어떤 조세가 또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산업에 있어서 조세지원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예산투입에 의한 지원이나 용자에 의한 지원(좁은 의미의 수산보조금)과 함께 수산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WTO 체제의 확대·강화 및 FTA 체결 확산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수산업 경영에 대한 동기유발 등 경영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수산부문 조세

57)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2000년 1월 7일 제8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0-1호)에서 수산업 부문이란 B05 어업(어업, 양식업, 관련 서비스업 포함-052에는 어획물 정리 및 수산물 선별 정리, 출하준비 서비스 포함)에 1512 수산물 및 저장처리업, 51313 수산물 도매업, 51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을 포함하는 범위로 이해할 수 있음.

제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제

우선,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산부문 조세지원의 일반적 쟁점

수산부문 조세지원에 대한 일반적 쟁점으로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수산업 부문에 왜 조세 지원이 필요한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세지원 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조세지원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왜냐하면, 수산업 부문에 조세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 수산업 부문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며, 지원방식은 비과세나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방식과 준비금 또는 감가상각과 같이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수산조세지원 관련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부조화 문제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설정된 보조금 협정(SCM)과 이행을 위한 논의동향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수산보조금 협상은 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금지 또는 감축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이지만, WTO SCM에서 정부의 세 입포기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성이나 수입대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WTO에서는 수산보조금 중에서 어떤 보조금을 허용하고 어떤 보조금을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바가 없으므로 사전에 기존 제도를 폐지 또는 삭감하는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으로서 정부의 세입포기, 즉 수산물 수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세 지원제도가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세제감면 조치에 대해서도 금지보조금의 범주로 분류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⁸⁾

따라서,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설정된 보조금 협정(SCM)과 이행을 위한 논의 동향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수산세제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수산물에 대한 비용감소 역할을 하는 조세지원이나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통상분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와의 부조화 문제

최근, 수산업은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기능적 측면에서 개선이 절실하다. WTO 체제의 출범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 따른 세계시장의 개방화·가속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른 공해어장 축소,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조업여건 악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구조 변화, 해양오염 등에 따른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 등의 여건 변화는 수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어업 및 양식업으로의 전환 요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등은 수산업의 비용을 증대시켜 경영을 압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주체인 젊고 우수한 인재의 이탈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수산조세의 지원이 절실한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연근해 어선의 원거리 조업의 장기화, 수입수산물의 급증, 고유가시대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선 어업의 경영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58)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2장 3 및 <표 2-1> 참조.

4) 농업 등 타산업 및 수산업내의 타업종과의 불균형 문제

조세부과 또는 감면의 제1의 원칙은 형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장 및 제4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업 등 타산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같은 수산업 내에서도 세계지원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농업부문 등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및 수산업내 타업종간의 불균형 시정문제가 개선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농가에서 부업으로 일정규모의 축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개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후계농업인에 의한 영농승계의 원활화를 위해 농업 부문에서는 재촌 자경농업인이 일정한 규모의 자경농지를 재촌 자경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영농종사자가 농지소재지 인근에 있는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농가주택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이 있으나, 수산업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지원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산업인 광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후 3년간 사업소득에 대해 세계지원, 1차 산업인 광업, 축산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를 한 때에는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수산업 부문에는 세계지원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5) 현행 세법규정에서의 수산부문 검토과제

(1) 농업 등 타 산업부문 세제와의 불균형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 범위의 차별성(조특법§105)

농업부문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동력경운기, 곡물건조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육묘상자, 농업용 스프링클러 등 38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용 기자재(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부문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어망, 부자, 낚시, 20톤 미만 선박, 양식용수차, 김양식용 유기산, 양식용 양수기, 양식용 약품

등 총 38가지가 있으나 ‘친환경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② 면세유 공급대상 범위의 불균형(조특법§106의2)

농업부문의 면세유구입권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동력절단기, 농업용양수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세척기 등 총 40개인데 반해, 수산부문의 면세유구입권 등 교부대상시설은 김건조시설, 멸치자숙·건조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등 총 9개뿐이다.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는 연근해·연안구역·내수면 어업용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획물운반선, 낚시어업용 선박,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농업부문에는 모든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대해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산부문에서는 수산물 운반선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나잠어업종사자가 이용하는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③ 지방세 감면 대상의 차별성(지방세법§267)

자영어민은 어선·어업권, 자영농민에게는 자경농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자영농민에게는 추가적으로 자경농업시설물(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까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자영어민에게는 자영어업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업부문의 자경농업시설물에 해당하는 자영어업시설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④ 비관세 대상 선용품 범위의 차별성(관세법§2)

선용품에 대한 정의⁵⁹⁾가 상선 위주로 정의되어 있어 조업하고 있는 어획목적의 어선의 경우 그물, 조상기 등의 어획도구 및 장비 등이 선용품에서 제외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이 어획도구 및 장비 등에 대한 관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어선 수리 시 필요한 부품 및 부속품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국내 조선소에서 수리하려면 해당 부품 및 부속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관세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선 수리 시 국내 조선소 수리보다는 해외 수리를 선호하고 있다.

59) 선용품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다.

⑤ 관세감면 해외임가공 품목범위에 수산물 불포함(관세법§101)

공산품에 대한 해외임가공 물품 관세 감면제도와는 달리 현재 해외임가공 수산물을 수입품으로 간주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⁶⁰). 관세법에서는 해외임가공을 위해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85류(전기기기과 그 부분품, 음향, 영상기기)와 제90류 중 제9006호(사진기(영화용제외), 사진용섬광기구, 섬광전구)로 제조·가공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하고 있다. 또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거나 제품특성상 세관장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해주는 경우에도 수입관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내 수산물 임가공업체는 국내 수산물 가공·제조원가의 상승으로 노동비등 가공·제조원가가 싼 해외(중국, 베트남 등)로 국내수산물을 수출하여 단순 임가공 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수산물 임가공업체는 관세 부과를 고려하여 수입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세관에서는 해외임가공 수산물이 감시대상품목이 되고 있다. 또한 해외 임가공 수산물 제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저해하고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⑥ 수산가공원료의 의제매입세 공제율 불균형(부가가치세법§17)

수산가공 원료의 의제매입세는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인 103분의 3 혹은 106분의 6(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보다 낮은 102분의 2이다. 통조림참치의 경우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저가 원료비 및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우리나라 참치통조림 공장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2) 농업에만 있는 지원세제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69)

농민에게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경영이양직접 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 있다.

60) 오징어를 냉동하여 수출한 후 해외에서 건조하고, 채를 썰어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품으로 간주하여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경한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현재는 없다.

②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의 면제(조특법§71)

농지·초지·산림지(농지 등)를 재촌 자경농민이 재촌 자경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의 기준은 농지 29,700m², 초지 148,500m², 5년 이상인 산림지는 297,000m², 조림기간 20년 이상 산림지는 990,000m² 이내이다.

수산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조세제도가 2006년 12월 31일 일몰되었다. 그 내용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 받은 자의 어선(총톤수 20톤 미만), 어업권(99,000m² 이내)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었다. 현재 수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생각했을 때 일몰된 어선·어업권 증여세 면제제도의 부활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선 및 어업권의 적당한 면제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70)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어업의 경우에도 육상양식어업용 토지에 있어 시설 선진화 및 어종 변경 등에 의하여 대토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현재는 없다.

④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법§266)

농업부문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이 영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선·어업권 및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없다.

⑤ 영농용 취득한 농가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농어촌특별세법§4)

농업부문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영농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영어를 위하여 취득하는 어가 주택 및 부속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없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과거에 비해 지원이 축소된 세제

① 원양어선원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 50% 감면 제도(소득세법 법률 제 3472~4744호 §72) 부활 여부

‘소득세법 법률 제3472(1981.12.31) ~ 제4744호(1994.3.24)의 제72조의 국외근로 소득 산출세액의 50% 감면혜택’이 1994년 12월 22일(소득세법 법률 제4803호)에 폐지됨으로써 핵심기술을 가진 선장 및 기관장들의 소득세 부담은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참치선망선의 경우 선장 및 기관장들이 임금이 높은 대만 등으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수산업 내에서의 형평성 및 적용 적정성 문제

① 수산가공업자의 면세유 공급문제(조특법§106의2)

법률규정에 따르면 면세유 공급대상은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이고, 면세유 공급대상 가공시설은 김 건조시설, 멸치 자숙·건조시설, 미역·다시마·툫 자숙·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 새우 자숙·건조시설, 패류 자숙 시설 등이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가공업자(자숙·건조시설 운영자)들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면세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를 제외한 수산물 가공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② 부가가치영세율 적용 대상(조특법§105)에 어선수리용역 포함 여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연근해 및 내수면어선에 대한 어선수리 등 수리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다. 어선어업에서 어선수리비(기관, 냉동기, 전기, 전자 및 선체 등) 등 어선수리용역에 대한 비용이 어업비용 중 평균 5.8%를 차지하고 있다.⁶¹⁾ 즉,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업용기자재(어망, 부자, 어업용 사료 등)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출 비용이 높은 어선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 감면혜택은 없다.

61)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의견.

③ 연근해어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범위(소득세법§12)

원양어선원은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영세 연근해어선원은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월 20만원 정도) 이내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및 국외 어선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근해어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범위를 원양어선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중도매인의 면허세 이중과세 문제(지방세법§161)

면허세는 정기부과와 수시부과 형태가 있다. 정기부과 형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수시부과 형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도매인의 경우 면허가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보고 면허세를 매년 1월 1일에 정기적으로만 부과해야 하는데, 연중에 면허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 면허로 판단하여 면허세를 재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⑤ 지방의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 문제(소득세법시행령§147)

해당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및 부칙 제15969호 제19조이다. 보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내용은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의무발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 총 매출액에 의무발행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기타지역의 중도매인의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은 <표 5-1>과 같다. 지방지역은 서울지역에 비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을 맞추지 못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다.

<표 5-1> 중도매인 매출계산서 의무발행비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서울소재 중도매인	45%	50%	55%	60%
기타지역 중도매인	25%	30%	35%	40%

자료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5969호 제19조.

2. WTO 체제하의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상에서 도출한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과제로 첫째, 수산부문에 있어서 조세지원의 일반적 쟁점으로 수산조세지원의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2장과 제3장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WTO 보조금 협정 및 현재 진행중인 수산보조금 협상의 결과에 조화로운 조세제도로의 개편을 지적하였다. 셋째, 유기체로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 등 타산업에서의 조세지원과의 제도적 불균형 문제와 수산업 내의 유사업종간 조세지원의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시한 조세지원의 일반적 쟁점인 수산부문 조세지원의 논리적 타당성 확보 문제는 해양환경 보전, 어촌문화 계승, 연안환경 개선, 어촌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산업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의 본질적 기능과 조세 기능과의 조화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기능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획득, 부의 재분배, 경제정책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기능이 조세의 본래적인 기능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능은 부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법은 입법국가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자원배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세 가지 분류법은 상대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른바 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 조세지원제도는 수산업과 농축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의 보호 및 육성 등 정부의 경제정책적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쟁점으로 도출한 수산부문 조세지원의 논리적 타당성 확보 문

제는 제외하고, 여기서는 나머지 세 가지 관점 즉,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조화,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의 조화, 타산업 및 유사업종과의 조화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여기서 말하는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한 국제규범은 WTO SCM과 도하 개발아젠다(DDA)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런데 수산조세와 관련된 수산보조금 협상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현 시점(2007년 10월)에서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앞의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 SCM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와 관련되는 정부의 세입포기와 수산보조금 협상과정에서 금지보조금 범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와 관련되는 정부의 세입포기는 제도적 검토로서는 쉽게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방해하는 정부의 세입포기도 제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검토도 대상 세제지원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자인 수산보조금 협상과정에서 금지보조금 범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면세유 제도의 개편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 면세유 공급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⁶²⁾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면세유⁶³⁾ 제도를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

62)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에서 제시한 수산보조금 분류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FAO의 수산보조금 분류기준(FAO, Report of EXPERT CONSULTATION ON ECONOMIC INCENTIVES AND RESPONSIBLE FISHERIES, FINAL DRAFT, 2000. 12)에서 조세포기와 유예를 비용감축보조금으로 분류함.

둘째, 미국의 수산보조금 분류기준(WTO, Environmentally harmful and Trade-distorting subsidies in fisheries, 2000, WT/CTE/W/154)에서도 소득세 유예 및 특별감가상각과 국내판매세 및 유류세 감면을 고정자본 및 운영경비 절감 보조금으로, 그리고 완제품 수출시 포함된 조세환급을 소득 및 가격지지 보조금으로 분류함.

63) 수산부문 면세유는 2007년 6월말까지 전액 면제되었으며, 2007년 12월말까지 75% 감면, 2008년 1월부터 과세로 결정되었으나, 시장개방화, 국제유가 급등, 수산자원의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기간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함

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의 면세범위는 4개 세액으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이며, 세금의 용도를 보면 교통세 및 주행세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재원으로 사용되고 교육세는 교육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 경영과는 무관한 부분이 면세형태로 적용되어 마치 수산업 경영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일명, 조특법)상의 면세 규정을 부가세법, 교통세법 등 개별세법으로 이관하여 외국의 감시대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울러 조특법상 일몰규정에 따른 개정 반복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시장개방화의 확대, 강화로 무역방벽 철폐 또는 완화, 이에 따른 수산물 수입 급증, 고유가시대 도래, 원양어업의 공해어장 축소, 연근해 자원고갈에 의한 어선어업의 경영악화, 친환경 수산업 요청으로 생산비용 증대, 소비자의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제3장(법제분석과 수혜자 의견)과 제4장(국내외 사례분석)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산업 부문 공통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수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이 요구되는 주요한 조세의 제도적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5-2> 참조).

(’07.4.30 국회 본회의 의결). 이와 같이 일몰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규정.

수산업 공통으로 개선이 필요한 세제

<표 5-2>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품목	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품목 대상 - 양어장용 필름 등 14개 품목	사후환급품목 대상 추가 - 어업용 얼음, 어선·어망용 방오도로, 양식장용 사료 살포기, 건멸치(건새우) 선별기, 오징어 어획용 추, 양식장용 액화산소 발생기 등
② 면세유 공급대상	면세유류 공급대상 - 연근해·연안·내수면어선 - 나잡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 어민직영 수산물생산기초시설 - 육상양식어업용·육상종묘생산시설 - 어획물운반선 - 낚시어선업용 선박	면세유류 공급 대상 추가 - 수협직영 어업지도선 및 나잡어업종사자 수송용 선박 - 수협직영 유류운반선 - 해양폐기물 및 어장정화용 선박 - 수산물생산기초시설('07.10 어민직영삭제)의 대상 확대 - 해상양식어업용·해상종묘생산시설
③ 안전안심수산물공급 시설투자	안전한 수산물 공급시설 투자 과세특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과세특례의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조항을 명시 산업별 일몰기간 재설정 -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 설정을 재검토 ※ 세제지원제도 홍보 및 지도 강화
④ 친환경 수산물시설 투자	친환경수산물시설투자과세특례 - 환경보전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등의 범위 · 수질오염방지시설,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청정생산시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1항 :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실시	과세특례의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환경보전시설 범위 및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청정생산시설 범위에 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 명시, 예코라벨링제도 도입 투자 과세특례 산업별 일몰기간 재설정 -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 설정을 재검토 ※ 세제지원제도 홍보 및 지도 강화
⑤ 신고납세자 특례 (청색신고자특례)	일본의 청색신고 제도	신고납세자 특례 - 개인 및 법인 어업자의 신고납세자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 ※ <표 4-2> 일본 사례 참조

① 수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품목 확대

대내외 어업환경의 극심한 변화를 반영하여 어선어업은 물론 양식업, 유통·가공업에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을 확대하여 수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양어장용 필름 등 14개 품목에 불과한 현행 품목에 어업용 얼음, 어선·어망용 방오도료, 양식장용 사료 살포기, 건멸치(건새우) 선별기, 오징어 어획용 추, 양식장용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② 수산물 생산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 확대

고유가 시대 및 WTO 체제하의 수산업의 경영을 안정시켜 지속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추가할 부문은 첫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가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및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불법어업 명예감시선의 사용유류와 해양폐기물 수거 및 어장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선박용 유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수협이 운영하는 나잡어업 종사자의 탈의 실용 난방시설 유류에 추가하여 동 종사자의 작업장인 어장까지 수송선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업인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이 운영하는 유류운반선을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추가하고, 넷째, 어업인 직영의 7종의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산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생산단계에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단순가공시설(생산기초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⁶⁴⁾ 다섯째, 현행의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시설에 한정하여 면세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해상종묘생산시설을 추가하여 수산물 양식어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안전안심 수산물 공급시설 투자 특례제도 개선

생선회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형태는 생산, 유통, 가공을 포함한 수산물 공급시설의 현대화, 첨단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64) 2007년 10월 수산물 면세유류 공급대상으로 '어민직영 수산물생산기초시설' 규정에서 '어민 직영'이 삭제됨. 또한 농업의 경우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자를 농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농산물 건조시설에 대해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8호(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내국인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위해요소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제3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만이 인지). 따라서,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대 수산업자 홍보 강화 또는 수산업(생산, 유통, 가공, 수출입 등)을 규제 또는 조장하는 법률에 명시 조항을 둬으로써 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④ 친환경 수산용 시설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 개선

수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은 친환경 수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 수산용 시설은 어선어업에 필요한 어선, 어구, 어망 그리고 양식업에 필요한 가두리, 양식조, 사료, 기타 양식도구 가공업에 필요한 제방 시설 및 도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과세 특례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서 환경보전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업체가 환경보전시설 투자 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수산업 및 친환경 수산용 시설에 대한 명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친환경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재활용시설, 방제시설, 청정생산시설⁶⁵⁾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65) 청정생산시설이란, 원료조달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부담감소 및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시설, 생산공정에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과 관련된 시설, 유통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부담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와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함.

⑤ 자신신고납세자 과세특례제도 도입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업 경영을 안정시키고 수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수산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색신고납세자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청색신고납세자제도란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에 따라 소득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세하는 신고납세제도를 말한다.⁶⁶⁾

(2) 어선어업 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① 어선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신설

고유가 및 임금상승 등 어선어업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어선어업의 경영을 건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어선수리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없어서 어선어업의 경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어선어업에서 어선수리비(기관, 냉동기, 전기, 전자 및 선체 등)에 대한 비용이 어업비용 중 평균 5.8%를 차지하고 있다.⁶⁷⁾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업용 기자재(어망, 부자, 어업용 사료 등)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출 비용이 높은 어선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② 원양어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소득세 특례

소득세법(법률 제8435호) 제12조 제4호에서 원양어업선박의 국외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이다. 이 조문에 의하여 원양어선원의 소득세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소득세법 법률 제3472(1981.12.31)~4744호(1994.3.24)의 제72조의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 감면혜택’이 1994년 12월 22일(소득세법 법률 제4803호)에 폐지됨으로써 핵심기술을 가진 선장 및 기관장들의 소득세 부담은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참치선망선의 경우 선장 및 기관장들이 임금이 높은 대만 등으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선장 및 기관장들의 국외근로소득 산출세액의 일정비율 감면제도를 부활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6)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청색신고의 과세특례조치 참조.

67)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의견.

(3) 수협 등 생산자 단체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협동조합으로서 수산자원의 관리 및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어업지도,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어촌계 등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표 5-3> 참조).

생산자 단체에 적용되는 세제

<표 5-3>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수산회사법인제도 과세 특례	<신설> ※ 「수산업법」상 수산회사법인 제도 도입 필요	수산회사법인의 과세 특례 - 법인세를 감면 - 부대사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치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동 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 어업인이 동 회사법인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② 조합 공동사업법인제 과세 특례	<신설> ※ 「수협법」상 공동사업법인제 도 도입 필요	조합공동사업법인 과세 특례 - 법인세 과세 특례 - 고유목적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① 수산회사법인제도 도입과 세제 지원제도 신설

수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칭)수산회사법인제도를 도입하고, 동 회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이룰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조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제도에 상응하는 제도이나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수산업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생산자가 참여하는 회사법인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생력 있는 수산업으로의 유도를 위해 기업형 어업(목적사업), 수산유통 및 가공, 냉동냉장의 대행사업(목적사업), 영어기자재 수리 및 임대사업(부대사업)을 경영하는 수산회사법인에 대해 농업회사법인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산회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를 위해서는 (가칭)수산회사법인의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제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수산업법」에 수산회사법인제도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을 제시한다.⁶⁸⁾

② 수협조합 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및 조세지원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여 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을 통한 회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수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도록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사업(판매, 유통, 공동출하, 브랜드화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고, 동 사업을 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수협법에서 공동사업법인제도를 신설하고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⁶⁹⁾

이상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개선방안 외에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어업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대해서도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새로운 여건 및 협동조합 이념을 반영하여 수산업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건전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어업권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조치 신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3)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여기서는 조세제도의 제1의 원칙인 과세의 형평성 확보측면에서 농업 등 타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부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것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산업 부문 공통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① 어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액 비과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68) 농업부문은 19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시 농업회사법인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69) 농협은 2004년 12월 농협법 개정시,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농협조합과 동일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농가부업소득의 특례조항으로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양어·가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이것에 대응하는 어가부업소득 조항을 신설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이 주업으로 신고한 수산업종 이외에 부업으로 영위하는 일정규모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예를 들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어업을 주업으로 신고한 어업인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양식, 채취, 유어납시, 축산, 가공,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및 그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어를 위한 어가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법 제4조 제11호에 의하여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영농종사자가 농지소재지 인근에 있는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농가주택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데 비해,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종사자의 어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가주택 과세특례에 조화되도록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어선 선적지나 어장 인근 연안시군에 있는 어가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수산업 공통 적용 대상

<표 5-4>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어가부업소득 비과세	<p>농가부업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양어·가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p>어가부업소득 비과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부업소득과 별도 규정으로 「어가부업소득 비과세」 조항 신설 ※ 어업인이 주업(주업으로 신고한 수산업)으로 영위하는 수산업 이외의 부업(축산·가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어가주택 취득세 과세 특례	<p>농가주택 취득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종사자가 영농을 위해 농가주택(부속토지포함) 취득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결 시군구 소재 한정 	<p>어가주택 취득세 비과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업 또는 양식업 종사자가 어선선적지나 양식장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결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구입시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수산업 공통 적용 대상 - 계속

<표 5-4>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③ 창업 중소기업 과세 특례	<p>창업 중소기업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과세 특례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연구 및 개발업, 물류산업 등 - 소득세 · 법인세 3년간 50% 감면 - 창업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농특세 비과세 	<p>창업 중소 수산기업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종에 어업, 양식업 및 관련 수산가공업을 포함
④ 사업용 자산취득 세액공제	<p>사업용 자산 신규취득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신규 취득시,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대상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광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p>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종의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을 삭제하고, 수산업으로 개선하여, 지원의 대상을 확대
⑤ 어업시설물 취득시 과세 특례	<p>자경농업시설물 과세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대상시설 : 양잠 ·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상폐수및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 상온, 농기계보관용에 한함), 농산물선별처리시설 	<p>자영어업시설물 과세 특례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업시설물에 조화되게 자영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대상시설 : 수산물 자숙 · 건조 · 처리시설, 보관창고(저온, 상온, 어구보관용에 한함),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부속시설 등
⑥ 어업용 대토지 과세특례	<p>육상농업용토지 대토지 양도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및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하거나,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하는 경우, 동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p>육상어업용토지 대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종전 육상양식 및 어업용(양식 및 종묘생산업등) 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신설

③ 창업 중소 수산기업에 세액감면

수도권 및 과밀 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광업, 연구 및 개발업, 물류산업

등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또한 창업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과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산업인 광업부와 마찬가지로 수산업 부문에도 이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위해 대상업종에 수산업(어업, 양식업, 수산가공업등) 업종을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수산업용 시설 신규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공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신규 취득시에 투자하는 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업종으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광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광업이나 축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수산업 부문에는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에 한정하여 1차 산업간 세제지원의 범위 등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삭제하고, ‘수산업’으로 대상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유사산업간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영어업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소규모 농업인이 경영하는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취득하는 양잠·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상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 상온, 농기계보관용에 한함), 농산물선별처리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수산업 부문에 해당되는 세제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농업부와 차별성을 시정하기 위해 자영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수산물 자숙·건조·처리시설, 보관창고(저온, 상온, 어구보관용에 한함), 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부속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⑥ 육상양식 및 어업용 토지의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및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하거나,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하는 경우, 동 농지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산업의 경우에도 농업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선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3년 이상 종전 육상양식 및 어업용(양식 및 종묘생산업 등) 토지 소재지 거주 및 자영업인이 어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1년 내에 새로운 육상어업용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자영하거나, 새로운 육상어업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육상어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자영하는 경우 동 육상어업용 토지 양도시에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2) 어선어업 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①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어업권 증여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일정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년 말까지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농지등 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이며, 영농자녀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농지등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후계농업경영인·임업후계자 또는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농지범위는 농지 29,700㎡ 이내, 초지 148,500㎡ 이내, 산림지 297,000㎡ 이내(조림기간 20년 이상인 것 990,000㎡), 그리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사업지구 등 외에 소재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계농업인에 의한 영농승계의 원활화를 위해 농업부문에서 재촌 자경농업인이 일정한 규모의 자경농지를 재촌 자경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수산업 부문 세제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영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일정한 규모의 어선·어업권을 영어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영업인

이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전부터 계속 영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영어자녀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수산경영인 또는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증여 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어선·어업권의 범위는 농업부문의 농지규모에 상응하는 어선 톤 수(예, 30톤 미만)와 어업권 규모(예, 9,900㎡ 이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5-5>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어선어업 적용 대상**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어선어업권에 대한 영어자녀의 증여세 면제	자경농민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일정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재존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영어자녀에게 증여하는 어선·어업권 과세 특례 신설 - 자영어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일정한 규모의 어선·어업권을 영어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② 자영어업인의 어선·어업권 상속 과세 특례	자경농민 농지 상속시 취득세 비과세 - 자경농민 및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를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어선·어업권 상속시 취득세 비과세 특례 신설 - 자영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수산업계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이 직접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한 규모의 어선·어업권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③ 선용품 및 어선수리용 관세 비과세	상선 선용품 및 수리용 부품 수입관세 면제 - 상선에 필요한 수입 선용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 면제 - 선용품의 범위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당해 선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상선위주로 규정되어, 어선용의 경우 과세됨	어선 선용품 및 수리용 부품 수입관세 면제 추가 - 어선의 어획도구 및 장비류, 어선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② 자영어업인의 어선·어업권 상속시 취득세 비과세

농업부문에서는 자경농민 및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를 상

속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한 농업승계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국세부문에서는 어선·어업권을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에 대한 공제가 인정되어 원활한 어업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지방세 부문에는 세제지원이 없어 국세와 지방세간 불균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농업과도 불균형한 세제이다.

따라서, 재촌 자영어업인,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졸업생 등이 직접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선·어업권을 상속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업부문과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어획목적 및 수리용 어선 장비류 관세 비과세 추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수입으로 보지 않아 관세가 면세되고 있는데, 관세법상(제2조 제9호) 선용품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⁷⁰⁾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당해 선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상선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획목적의 어선의 경우 그물, 조상기 등의 어획도구 및 장비류가 선용품에서 제외되어 해외에서 조업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선박의 경우 이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리고 어선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므로 국외에서 선박을 수리할 때는 관세가 비과세 처리되나, 국내에서 선박수리 시 이 부분품 및 부속품을 수입하여야 하므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수리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국내 어선수리업계의 발전·고용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면세대상의 선용품의 범위에 어선의 어획도구 및 장비류, 어선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0)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함.

(3) 양식업 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① 육상양식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1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 조화되도록 어업인이 직접 경영하는 육상양식장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경영에 사용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양식업 적용 대상

<표 5-6>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육상양식용 토지 양도소득세 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1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농지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 자영어업인이 직접 경영하는 육상양식장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
②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토지 - 고율의 종합합산과세 : 2/1000~5/1000 저율분리과세 대상 및 세율 - 저율 분리과세 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 - 적용세율 : 0.7/1000	육상양식어업용 재산세 저율분리 과세 -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 :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

② 육상어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종합합산과세(2/1000 ~ 5/1000)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1차 산업인 농축임업용 토지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산업간 형평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를 저율로 분리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수협 등 생산자 단체부문 적용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① 수협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및 농협법에 의거하여, 농협조합 또는 농협중앙회가 자기 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조합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운영함에 따라 농협 직원이 취득한 농협조합 또는 농협중앙회 지분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과 상응하게 수협법에 조합원 또는 조합원 외의 자가(수협 직원이) 수협중앙회(또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사업부문에 우선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취약한 수협에 대해 세제지원에 의한 직원들의 우선 출자를 활성화하여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경영 및 공적자금의 조기상환 기반을 조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표 5-7>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 - 생산자 단체 적용 대상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자사지분 배당 소득 소득세 비과세	농협자사지분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요건은 근로자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자사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별 자사지분의 액면가액 1,800만원(2008년말까지 3,000만원) 이하일 것	수협자사지분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 - 수협법에 자격요건 규정 필요 - 비과세 요건은 근로자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자사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별 자사지분의 액면가액 1,800만원(2008년말까지 3,000만원) 이하일 것
② 어선어업권 취득시 지방세 과세특례	농업법인 영농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50% 경감	영어조합법인의 부동산·어선·어업권 취득시 지방세 감면 신설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어선·어업권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② 어업법인의 영어용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세법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수산업 부문의 조세지원제도는 규정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업부문에 상응하는 수산업 부문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어조합법인이 영어용으로 창업 후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어선·어업권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타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첫째, 음식점업보다 수산가공부분의 의제매입세 부분 혜택이 미흡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통조림 참치의 경우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저가 원료비 및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우리나라 참치통조림 공장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산가공 원료의 의제매입세는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인 103분의 3 혹은 106분의 6(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보다 낮은 102분의 2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참치통조림 등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도매인 등 연중에 연장·갱신되는 면허에 대해 면허세 이중과세 문제의 해결을 들 수 있다. 중도매인의 경우 면허가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보고 면허세를 매년 1월 1일에 정기적으로만 부과해야 하는데, 연중에 면허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 면허로 판단하여 면허세를 재부과하고 있다. 이에 연장 및 갱신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봐서 정기분의 면허세만 부과하도록 법조문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수산업내 유사업종과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 소득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인이 받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되고 있다. 이는 어업경영자 및 어획물 운반업자가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에 따라 어업인이 받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5-8>

수산업내 유사업종간 불균형 시정 대상 세제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① FTA체결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원금 소득세 비과세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	어업협정 지원금의 소득세 면제 및 어선·어구 개선 비용에 대한 과세 특례와 차별성 시정
② 영어상속공제	영농, 영어 상속 공제 - 일정한 요건하에 영농(양축·영립 포함)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농지·초지·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됨으로써 원활한 영농승계 및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영어상속공제대상 확대 - 영어상속재산의 범위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를 상속공제대상에 추가
③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원양어선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부문 영세율 적용 : 사료 및 어업용 기자재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가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선 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④ 어업종사자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원양어선원 소득세 비과세 - 선원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원양어업선박 및 국외 등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연근해어선원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 -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추가

② 영어상속공제 대상 범위 확대

일정한 요건하에 영농(양축·영립 포함)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농지·초지·산림지 및 어선·어업권을 영농 및 영어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됨으로써 원활한 영농·영어승계 및 영농후계자, 어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가 있다.

이 상속공제대상인 영어상속재산의 범위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용 토지를 상속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유사업종간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연근해 및 내수면 어선 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어업인이 2009년 말까지 공급받는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부문의 사료 및 어업용 기자재 37개 품목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양어선에 제공되고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어선수리용역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에 조화될 수 있도록 연근해 어선어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또한 수산업내 업종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및 내수면 어선의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④ 연근해 어선원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원양어선원의 경우에는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에 연근해 및 내수면어선원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어선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만 근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원양어선원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총급여액이 적은 연근해어선 및 내수면 어선의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정도가 적은 편이므로 형평성 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원양어선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타 산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외에도 원양어선 및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 운송용 선박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제도를 동일한 해상운송업인 어획물운반선에 대해 형평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론 - 총괄 및 정책건의

1. 총괄

이상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의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상술하면 첫째, 수산부문 조세지원의 일반적 쟁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산부문 조세지원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수산조세 관련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부조화 문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수산보조금 협상은 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금지 또는 감축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이지만, WTO SCM에서 정부의 세입포기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수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와의 부조화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 수산업은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기능적 측면에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농업 등 타산업 및 수산업내의 타업종과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세부과 또는 감면의 제1의 원칙은 형평의 원칙이므로 타산업 또는 수산업내 유사업종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는 문제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세법규정에 대해 제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WTO체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수산조세의 개선방안을 새로운 국제규범과의 조화,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의 조화, 타산업 및 유사업종과의 조화로 구분하여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건의

이상의 분석에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물론 각 부문별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은 그 방향성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 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핵심으로는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필요한 것과 조세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타산업과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수산조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현실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1단계 추진전략으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립된 중장기 실천계획에 의거하여 2단계 추진전략으로 실태조사 및 현지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부문별 또는 조세별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3단계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법상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절차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단계에서는 개선된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되도록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관계 부처간에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수산부문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산업용 유류사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WTO SCM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성과나 수입대체와 관련되는 정부의 세입포기와 수산보조금 협상과정에서 금지보조금 범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산보조금 협상과정에서 금지보조금 범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면세유 제도의 개편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면세유 제도를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세근거를 부가세법, 교통세법 등 개별세법으로 이관하여 외국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수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사후환급품목 확대

대내외 어업환경의 극심한 변화를 반영하여 어선어업은 물론 양식업, 유통·가공업에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을 확대하여 수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의 건전화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양어장용 필름 등 14개 품목에 불과한 현행 품목에 어업용 얼음, 어선·어망용 방오도료, 양식장용 사료 살포기, 건멸치(건새우) 선별기, 오징어 어획용 추, 양식장용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③ 수산물 생산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 확대

고유가 시대 및 WTO 체제하의 수산업의 경영을 안정시켜 지속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추가할 부문은 첫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의 어업지도선, 자율관리 공동체의 불법어업 명예감시선, 어장정화선용 유류 둘째, 수협이 운영하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작업장인 어장까지 수송선용 유류 셋째, 수협의 유류운반선 넷째, 산지의 단순가공시설(생산기초시설)의 범위 확대 다섯째, 해상양식어업용 시설 및 해상종묘생산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④ 친환경 수산용 시설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 개선

수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은 친환경 수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 수산용 시설은 어선어업에 필요한 어선, 어구, 어망 그리고 양식업에 필요한 가두리, 양식조, 사료, 기타 양식도구 가 공업에 필요한 제방 시설 및 도구를 포함한다. 어업인 대부분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수산업 및 친환경 수산용 시설에 대한 명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에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의 친환경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⑤ 자진신고납세자 과세특례제도 도입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업 경영을 안정시키고 수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수산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색신고납세자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청색신고납세자제도란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에 따라 소득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세하는 신고납세제도를 말한다.

⑥ 어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액 비과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어가부업소득 조항을 신설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이 주업으로 신고한 수산업종 이외에 부업으로 영위하는 일정규모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전액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예를 들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어업을 주업으로 신고한 어업인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양식, 채취, 유어낚시, 축산, 가공,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및 그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것으로 한다.

⑦ 영어를 위한 어가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어업, 양식

농어촌특별법 제4조제11호에 농가주택 과세특례에 조화되도록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어선 선적지나 어장 인근 연안시군에 있는 어가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한다.

⑧ 육상양식 및 어업용 토지의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 농업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3년 이상 종전 육상양식 및 어업용(양식 및 종묘생산업 등) 토지 소재지 거주 및 자영어업인이 어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1년 내에 새로운 육상어업용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자영하거나, 새로운 육상어업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육상어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 및 자영하는 경우 동 육상어업용 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⑨ 수협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및 수협법에 수협에 대해 세제지원에 의한 직원들의 우선 출자를 활성화하여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경영 및 공적자금의 조기상환 기반을 조성하도록 조합원 또는 조합원 외의 자가(수협직원이) 수협중앙회(또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사업부문에 우선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 소득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인이 받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되고 있다. 이는 어업경영자 및 어획물 운반업자가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에 따라 어업인이 받는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제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시간적 한계 및 관련자료 입수의 곤란 등으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결론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향후 연구에서는 대안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김기성, 수산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 이택용 외, 「2006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 신고를 위한 조세특례 이론과 실무」, 지식공작소, 2007.
- 이종성, 농·어업부문 조세감면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 2006. 6.
- 주문배, “주요 국제기구의 수산보조금 분류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월간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_____, “UNEP Workshop(2001.2) 수산보조금 제안서의 주요내용과 쟁점”, 「해양수산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주문배 외, 「수산정책자금 운용의 효율적 발전방안」, 수협중앙회, 2005.
- _____,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해양수산부, 2001.
- 법제처, 「조세제한특례제한법」
- _____, 「소득세법」
- _____, 「부가가치세법」
- _____, 「수산업협동조합법」
- 農林水産省、農林水産關係稅制について(<http://www.maff.go.jp>)

부록 1. 어선어업자설문지(예시)

1. 수산조세의 납부 및 조세부담 실태

1-1 귀하 혹은 귀사가 납부하고 있는 수산조세 세목을 모두 고르시오(해당되는 번호를 해 주십시오).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소득세 | <input type="checkbox"/> ② 법인세 | <input type="checkbox"/> ③ 상속/증여세 | <input type="checkbox"/> ④ 부가가치세 |
| <input type="checkbox"/> ⑤ 특별소비세 | <input type="checkbox"/> ⑥ 인지세 | <input type="checkbox"/> ⑦ 증권거래세 | <input type="checkbox"/> ⑧ 교육세 |
| <input type="checkbox"/> ⑨ 교통/에너지/환경세 | <input type="checkbox"/> ⑩ 농어촌특별세 | <input type="checkbox"/> ⑪ 종합부동산세 | <input type="checkbox"/> ⑫ 관세 |
| <input type="checkbox"/> ⑬ 취득세 | <input type="checkbox"/> ⑭ 등록세 | <input type="checkbox"/> ⑮ 주민세 | <input type="checkbox"/> ⑯ 주행세 |
| <input type="checkbox"/> ⑰ 면허세 | <input type="checkbox"/> ⑱ 재산세 | <input type="checkbox"/> ⑲ 사업소세 | <input type="checkbox"/> ⑳ 공동시설세 |
| <input type="checkbox"/> ㉠ 기타() | | | |

1-2 귀하(사)가 납부하고 있는 수산조세 중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세목을 2개 고르시오(해당되는 번호를 해 주십시오).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소득세 | <input type="checkbox"/> ② 법인세 | <input type="checkbox"/> ③ 상속/증여세 | <input type="checkbox"/> ④ 부가가치세 |
| <input type="checkbox"/> ⑤ 특별소비세 | <input type="checkbox"/> ⑥ 인지세 | <input type="checkbox"/> ⑦ 증권거래세 | <input type="checkbox"/> ⑧ 교육세 |
| <input type="checkbox"/> ⑨ 교통/에너지/환경세 | <input type="checkbox"/> ⑩ 농어촌특별세 | <input type="checkbox"/> ⑪ 종합부동산세 | <input type="checkbox"/> ⑫ 관세 |
| <input type="checkbox"/> ⑬ 취득세 | <input type="checkbox"/> ⑭ 등록세 | <input type="checkbox"/> ⑮ 주민세 | <input type="checkbox"/> ⑯ 주행세 |
| <input type="checkbox"/> ⑰ 면허세 | <input type="checkbox"/> ⑱ 재산세 | <input type="checkbox"/> ⑲ 사업소세 | <input type="checkbox"/> ⑳ 공동시설세 |
| <input type="checkbox"/> ㉠ 기타() | | | |

1-3. 수산조세 중 세제감면비율, 일몰기간, 세제감면대상 등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목을 2개 고르시오(해당되는 번호를 해 주십시오).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소득세 | <input type="checkbox"/> ② 법인세 | <input type="checkbox"/> ③ 상속/증여세 | <input type="checkbox"/> ④ 부가가치세 |
| <input type="checkbox"/> ⑤ 특별소비세 | <input type="checkbox"/> ⑥ 인지세 | <input type="checkbox"/> ⑦ 증권거래세 | <input type="checkbox"/> ⑧ 교육세 |
| <input type="checkbox"/> ⑨ 교통/에너지/환경세 | <input type="checkbox"/> ⑩ 농어촌특별세 | <input type="checkbox"/> ⑪ 종합부동산세 | <input type="checkbox"/> ⑫ 관세 |
| <input type="checkbox"/> ⑬ 취득세 | <input type="checkbox"/> ⑭ 등록세 | <input type="checkbox"/> ⑮ 주민세 | <input type="checkbox"/> ⑯ 주행세 |
| <input type="checkbox"/> ⑰ 면허세 | <input type="checkbox"/> ⑱ 재산세 | <input type="checkbox"/> ⑲ 사업소세 | <input type="checkbox"/> ⑳ 공동시설세 |
| <input type="checkbox"/> ㉠ 기타() | | | |

1-4. 귀하(사)께서 1-3에서 선택한 개선필요세목별 개선항목을 선정해 주십시오(해당되는 번호를 해 주십시오).

1-3 개선필요세목	개선필요항목				
	<input type="checkbox"/> ① 일몰기간	<input type="checkbox"/> ② 감면대상	<input type="checkbox"/> ③ 감면비율	<input type="checkbox"/> ④ 지원방법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일몰기간	<input type="checkbox"/> ② 감면대상	<input type="checkbox"/> ③ 감면비율	<input type="checkbox"/> ④ 지원방법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지원방법 : 경영성과 및 수산업발전 기여도에 따른 세제지원액 차등 지급 등

2. 일몰기간의 적정성

2-1. 현재 귀사(ها)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1) 2008년말 일몰제 적용세제

감면대상 및 요건	법조문	현재혜택여부
1) 어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혹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 감면비율 : 수도권내(소기업 20%), 수도권외(소기업 30%, 중기업 15%)	조특법§7	
2)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영세율적용품목 : 어망의 37개품목 - 적용대상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어촌계 포함)	조특법§105	
3)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기자재(어망의 37개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	

(2) 2009년 말 일몰제 적용세제

감면대상 및 요건	법조문	현재혜택여부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 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가입대상 : 20톤이하 어선 소유어업인 등	조특법§88의5, 조특법(법률4806)부칙§17	
2)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 : 어업활동 제한되는 어업자, 어선원이 받는 실업지원금 등	조특법§104의2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비율 : 총급여액의 30% 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18의2	
4)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출자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감면 - 비과세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하 배당금	조특법§88의5	
5)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하 예탁금	조특법§89의3	
6)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이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면제 :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주민세 면제	조특법§67	
7) 수협등에서 용자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116	
8)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변경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116	
9) 자영업민들의 어선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 감면기준 : 어선규모 30톤이하, 어장 10ha이하	지방세법§267	
10) 영어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264	
11) 어촌공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 감면기준 : 시가표준액 100만원미만 주거용건축물	지방세법§265	
12)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면제 - 감면기준 : 20톤미만 소형어선	지방세법§262	
13) 수산업 사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지방세법§267	

(3) 2012년 말 일몰제 적용세제

감면대상 및 요건	법조문	현재혜택 여부
1)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육·에너지·환경세, 주형세 감면	조특법 §106의2	

(4) 2014년 6월말 일몰제 적용세제

감면대상 및 요건	법조문	현재혜택 여부
1) 중소기업(어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3)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출자배당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	농특세§4	
4) 조합원이 받는 수협 예탁금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5)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6) 자영업민 등의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7) 영어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등록세 면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8)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9)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주민세 면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10) 천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선박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농특세§4	

(5) 일몰기간이 없는 적용세제

감면대상 및 요건	법조문	현재혜택 여부
1) 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감면기준 :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	소득세법§12	
2) 원양어선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감 - 감면기준 : 월 150만원 이내 금액	소득세법§12	
3) 사망한 어민이 상속하는 어선·어업권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 - 감면기준 : 영어상속재산 2억원이내	상속세·증여세법§18	
4)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환급대상 : 어민,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주업법인 - 적용대상 : 양어장용필름, 어업용발전기,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등	조특법§105의2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영역에서 포획, 채집한 수산물 등의 면세	관세법§93	
6) 천재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선박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지방세법§108	
7) 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어선·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지방세법§109	
8) 조합원이 받는 수협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지방세법 §89의3	
9) 어업권, 건축물에 대한 면허 변경 시 면허세 면제	지방세법§163	

2-2. 질문 (2-1)에서 현재 귀사(하)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세제 중에서 연장이 가장 필요한 세제를 3개 선택해서 적어주시고, 희망 연장기간을 체크(√) 해주십시오.

※ 연장필요세제항목 예시 : 귀사가 감면받고 있는 세제 중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세제가 '(3) 2012년말 일몰제 적용세제의 1)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육·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감면'이라면 연장필요세제 항목에 '(3) - 1)'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연장필요세제항목	희망 연장기간				
	① 1년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이상
	① 1년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이상
	① 1년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이상

3. 농업부문 지원세제와 비교했을 때 수산부문 감면대상 확대가 필요한 세제

3-1. 귀사(하)는 수산부문 지원조세제도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조특법§105)'내용 중 농업에 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하여 주십시오.

※ 참조 : 농업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곡물건조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 세척기, 육묘상자, 농업용 스프링클러 등 38가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용 기자재(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는 어망, 부자, 낚시, 20톤미만 선박, 양식용 수차, 김양식용 유기산, 양식용 양수기, 양식용 약품 등 총 38가지가 있으나 '친환경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

(1) 농업에 비해서 수산부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평가하여 주십시오(해당되는 번호를 √해 주십시오).

- ①수산 매우 유리 ②수산 유리 ③동일하다 ④수산 불리 ⑤수산 매우 불리

(2) 답변(1)에서 수산불리 및 수산매우불리라고 답변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1개 선택(√)하여주십시오.

- ① 부가가치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종류 추가 필요
- ② 농업의 친환경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친환경어업용기자재 개발 필요
- ③ 지출비용이 높은 어선수리비의 부가가치세 감면혜택 필요
- ④ 적용대상(어민, 영어조합법인, 수협조합·어촌계, 어업주업법인) 외에 수산가공 및 유통업자 등도 추가 필요
- ⑤ 기타()

(3) 답변(2)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한 의견 및 예시를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

3-2. 귀사(하)는 수산부분 지원조세제도인 ‘면세유 공급대상(조특법§106의2)’내용 중 농업에 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하여 주십시오.

※ 참조 : 농업부분의 면세유구입권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동력절단기, 농업용양수기,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세척기 등 총40개인데 반해, 수산부분의 면세유구입권 등 교부대상시설은 김건조시설, 멸치자숙·건조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등 총 9개뿐이다.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는 연근해·연안구역·내수면 어업용선박, 나잡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획물운반선, 낚시어업용 선박,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등도 포함된다.

(1) 농업에 비해서 수산부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평가하여 주십시오(해당되는 번호를 해 주십시오).

- ①수산 매우 유리
- ②수산 유리
- ③동일하다
- ④수산 불리
- ⑤수산 매우 불리

(2) 답변(1)에서 수산불리 및 수산매우불리라고 답변하신 분은 ‘면세유 공급대상’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1개 선택()하여주십시오.

- ① 적용대상(어민, 영어조합법인, 수협조합·어촌계, 어업주업법인) 외에 수산가공 및 유통업자 등도 추가 필요
- ② 면세유구입권 교부대상시설 종류 추가 필요(예를들면, 코다리건조시설 등)
- ③ 기타()

(3) 답변(2)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한 의견 및 예시를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

3-3. 귀사(하)는 수산부분 지원조세제도인 ‘자영어민들이 취득하는 어선·어업권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법 §267)’ 내용 중 농업에 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하여 주십시오.

※ 참조 : 자영어민은 어선·어업권, 자영농민에게는 자경농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자영농민에게는 추가적으로 자경농업시설물(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까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1) 농업에 비해서 수산부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평가하여 주십시오(해당되는 번호를 해 주십시오).

- ① 수산 매우 유리
- ② 수산 유리
- ③ 동일하다
- ④ 수산 불리
- ⑤ 수산 매우 불리

(2) 답변(1)에서 수산물리 및 수산매우불리라고 답변하신 분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선·어업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1개 선택(√)하여주십시오.

- ① 적용대상(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② 농업의 자경농업시설물에 해당하는 자경어업시설물 (예를들면, 육상수조시설, 자숙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등) 추가 필요
- ③ 감면대상 기준인 어선 30톤이내, 어장 10ha 이내 확대 필요
- ④ 기타()

(3) 답변(2)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한 의견 및 예시를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

4. 농업부문에만 존재하는 지원세제 대비 수산부분 추가 필요 세제

4-1. 귀사(하)는 농업부문에만 존재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69)’와 같은 수산부분 조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조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경영이양직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1) 농업부문에만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부분을 수산에도 추가(자경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번호를 √해 주십시오).

- ① 추가 매우 필요 ② 추가 필요 ③ 보통 ④ 추가 불필요 ⑤ 추가매우불필요

(2) 답변(1)에서 추가 매우 필요 및 추가필요라고 답변하신 분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시설로 수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적어주십시오(예를들면 자경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 등).
()

4-2. 귀사(하)는 농업부문에만 존재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조특법§71)’와 같은 수산부분 조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조 : 농지·초지·산림지(농지 등)를 재혼자경농민이 재혼자경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의 기준은 농지 29,700m², 초지 148,500m², 5년이상인 산림지는 297,000m², 조림기간 20년이상 산림지는 990,000m²이내이다.

(1) 농업부분에만 있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부분을 수산부분에서는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어업권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번호를 \surd 해 주십시오).

- ① 추가 매우 필요 ② 추가 필요 ③ 보통 ④ 추가 불필요 ⑤ 추가매우불필요

(2) 답변(1)에서 추가매우필요 및 추가필요라고 답변하신 분은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어업권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감면기준은 농업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번호를 \surd 해 주십시오).

적용대상	증여세를 면제해야 하는 적정 감면기준			
어 선	① 20톤미만	② 20톤~30톤미만	③ 30톤~40톤미만	④ 40톤이상
어 업 권	① 10ha 미만	② 10ha~20ha미만	③ 20ha~50ha미만	④ 50ha이상
기 타	()			

4-3. 귀사(하)는 농업부분에만 존재하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70)’와 같은 수산부분 조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조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1) 농업부분에만 있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부분을 수산부분에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번호를 \surd 해 주십시오).

- ① 추가 매우 필요 ② 추가 필요 ③ 보통 ④ 추가 불필요 ⑤ 추가매우불필요

(2) 답변(1)에서 추가 매우 필요 및 추가필요라고 답변하신 분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수산부분의 시설 및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적어주십시오(예를들면 육상양식어업용 토지 등을 시설 선진화 및 어종 변경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등).

()

5. 과거·현재 적용 세제 기준 등을 비교했을 때 수산부분 감면대상 확대가 필요한 세제

5-1. 귀사(하)는 관세법상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관세법§93)’에서 2007년 5월 29일 관세법시행규칙 §43 개정으로 기존에 포함되었던 수산물이 제외되었다.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관세면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수산물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WTO 체제에 있어서 수산부문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2007年 12月 27日 印刷
2007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李 正 煥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세븐스가든 2263-0066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관매센터
Tel : 394-0337